

다들 교사를 위한
생활·인권 교육

매뉴얼

- 문제 행동 예방
-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 생명 존중교육
- 사안별 대처 매뉴얼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새로운 학교
함께 하는 경기교육

발 간 사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학생인권조례가 의회 통과하여,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은 수많은 문제들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힘겨워 합니다.

한편에선 입시중심 서열주의에 바탕한 관행적 학생인권침해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학교생활을 힘들어하고 배움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일으키는 여러 문제들, 이를테면 폭력적인 행동, 불량 서클,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학생 자살, 성폭력 등이 ‘교실붕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에 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 11개 교육지원청에 Wee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과 생활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연수와 자료 개발·보급, 단위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친구사랑운동전개, 안전한 학교만들기, 건전한 학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의 폭력사안과 자살, 외부인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을 볼 때, 시기적절한 예방 교육이나 문제를 일으킨 학생과의 상담과 신속한 문제 처리 등에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처리하는데 있어 담임선생님들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를 위한 생활·인권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 매뉴얼이 적극 활용되어 각종 문제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지도방안

에 대해서 일선 선생님들의 지도경험을 충분히 경청하여, 한층 정교하고 표준화된 교육매뉴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집필과 편집에 참여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9월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차 례

발 간 사

□ 1부. 문제 행동 예방 교육	1
I. 중독적 문제 행동	3
II. 공격적 문제 행동	13
III. 부적응 문제 행동	19
IV. 성관련 문제 행동	26
V. 가정적 문제 행동	39
□ 2부. 생명 존중(자살 예방) 교육	47
I. 자살에 대한 바른 이해	49
II. 자살 문제 행동	52
III. 자살위기 대처 방법	62
IV. 처리 절차	68
V. 청소년 자살 사후 개입	69
□ 3부. 학생 사안별 대처 방법	73
□ 4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117
□ 부록(각종 양식)	137

1부

문제 행동 예방 교육

- I. 중독적 문제 행동
- II. 공격적 문제 행동
- III. 부적응 문제 행동
- IV. 성관련 문제 행동
- V. 가정적 문제 행동



I 중독적 문제 행동

1. 인터넷 중독

가. 인터넷 중독의 징후

- 밤늦게까지 인터넷 게임을 하여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지나치게 피로해 낮 시간에 졸고 있거나 성적이 떨어진다.
- 이전에는 흥미를 느끼고 열중하던 또래 관계나 취미 생활에 흥미를 잃고 게임만이 새로운 취미 생활이 되어 다른 것들에 재미를 못 느끼게 된다.
- 형제들이나 부모님과 대화도 줄어들고 점점 멀어지게 될 뿐 아니라 부모님이 컴퓨터 사용에 대하여 지적하면 짜증을 내거나 심하게 화를 내고 반항적으로 돌변한다.
- 학교생활이나 또래 관계에서는 소극적이고 나약하며 자신감이 떨어져서 항상 위축된 생활을 한다.
- 아이에게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경우 산만하고 급한 아이의 특성상 자극적이고 빠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인터넷게임에 쉽게 중독될 수 있다. 그래서 수업시간,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는 산만한 아이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나. 인터넷 중독의 단계

- 과다사용 단계 :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인터넷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난다.
- 중독경향 단계 : 매일 새벽까지 인터넷을 하기 시작하고 학업에 약간의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족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 중독직전 단계 : 밤새도록 인터넷을 하기 시작하고, 시간조절이 잘 안되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훔쳐서 PC방에 가고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 중독단계 : 아무리 인터넷을 많이 해도 만족이 안 된다(내성), 인터넷을 못하면 초조해지고 우울해져서 견딜 수가 없다(금단현상), 학업 실패가 계속되는 줄 알면서도 상황을 전혀 조절할 수가 없다.

다. 인터넷 중독의 주요 현상

- 꼭 해야 할 일이 없으면 모든 시간을 인터넷을 하는 데 보낸다.
-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인터넷을 그만둘 수가 없다.
- 인터넷을 한 후 해야 할 일이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등 건망증이 는다.
- 인터넷 때문에 시험을 망친 적이 있다.
- 컴퓨터를 켜 후에 가장 먼저 인터넷을 한다.
-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도 인터넷 생각이 난다.
- 인터넷 때문에 가족들과 다툰 적이 있다.
- 인터넷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시간을 어긴 적이 많다.
- 인터넷을 하는 도중에 방해를 받으면 과도하게 화를 낸다.
- 내가 현실 생활보다 인터넷 상에서 더 유능하게 느껴진다.
- 인터넷을 하는 동안은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 인터넷을 하느라 식사를 거른 적이 많다.
- 인터넷을 하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라. 체크리스트

1) 청소년용 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때때로 그렇다(2), 자주 그렇다(3), 항상 그렇다(4)로 구분하여 표시하세요.

1.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
2.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 생활보다 더 좋다. []
3.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
4.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
5.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
6.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7.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
8.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
9.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
10.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
11.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
12.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
13.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

- 14.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
- 15.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
- 16.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
- 17.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
- 18.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
- 19. 누가 게임을 못 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
- 20.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

총합 점수 []

2) 청소년용 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 해석

유형	분류기준	특징	비고
고위험 사용자	게임중독 점수 49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세계보다는 가상의 게임세계에 몰입하여 게임공간과 현실생활을 혼돈하거나 게임으로 인하여 현실세계의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 부적응 문제를 보이며, 부정적 정서를 나타낸다. 하루 2시간 30분 이상 매일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게임을 하느라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등 게임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통제력이 낮아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인내력과 효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공격적 성향이 높으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문적 치료 지원 및 상담 요망
잠재적 위험 사용자	게임중독 점수 38~48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사용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가상세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게임에 몰입하여 게임과 현실생활을 혼돈하거나 게임으로 인하여 현실세계의 대인관계, 일상생활에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루 2시간이상, 주 5~6회 정도 게임을 한다. 공격적 성향을 보이며 자기 통제력이 낮고 충동적이며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경향이 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임중독 행동주의 및 예방 프로그램 요망
일반 사용자	게임중독 점수 37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 습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게임과 현실세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고 게임으로 인한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 하루 1시간 30분 이하, 주 1~2회 이하로 게임을 하는 등 인터넷게임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제행동을 회피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속적 자기 점검 요망

마.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방법

- 평소 아이와의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잦은 대화로 스트레스를 풀도록 도와준다.
- 부모님도 컴퓨터를 배워 아이의 컴퓨터 활동에 참여하고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컴퓨터는 거실같이 개방된 장소에 두어서 관리하고,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시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 식사와 수면을 제시간에 하여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
-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를 켜거나 모니터 앞에서 식사나 간식을 먹는 습관을 들이지 않도록 한다.
- 게임을 하면 시간왜곡 현상이 있으므로 실제 컴퓨터 하는 시간을 기록하여 컴퓨터 사용계획표를 짜도록 한다.
- 게임을 대체할 만한 활동이나 취미를 제공하여 아이들에게 현실 공간에서 또래 관계의 즐거움을 알도록 도와준다.

바. 인터넷 중독 학생의 지도 방법

-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뒤에 인터넷을 하도록 한다.
- 하루에 인터넷 사용 시간(1~2시간 이내)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다.
- 인터넷만큼 즐거움을 주는 다른 취미나 오락거리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오락이나 취미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돕는다.
- 인터넷 중독자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므로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지혜를 갖추도록 돕는다. 사고의 전환(인지치료), 복식 호흡법(행동치료), 근육 이완법(행동 치료) 등을 활용한다.
-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인간 교류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직접 부대끼며 느끼고 얻는 것의 가치를 찾도록 돕는다.
-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여 잘못 굳어질 수도 있는 자세의 불균형을 방지한다.
- 인터넷 이외에 무엇이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의 목록을 하나만 적어 보도록 한다.
- 인터넷을 하고 난 후, 그것을 인터넷 일기에 적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터넷 일기에는 사용내용, 시간, 인터넷을 하기 전후의 기분, 그 날의 전체적인 기분, 스트레스의 유무 등을 기록하여 자신이 인터넷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떤 때에 더 인터넷을 자주 하게 되는지 그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 인터넷 사용 시간이 줄어들고 다른 활동이 늘어가는 추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재미를 경험하도록 한다.

사. 인터넷 중독 학생 부모와의 상담 방법

- 자녀를 절대로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야단치면 PC방에 몰래 가게 되거나 반항심이 생긴다)
- 왜 인터넷에 빠지게 되었는지 현실적인 원인(맞벌이 부부, 시간 사용의 방임, 가까이 지내는 친구의 영향 등)을 함께 찾아본다.
- 인터넷 사용의 관리를 어렵게 하는 가족 내의 문제(대화 단절, 불화)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찾는다.

- 인터넷 사용 시간제한 등 일상생활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 게임에 같이 참여하여 학생을 이해하는 기회도 가지고, 같이 해 본 게임의 유익함이나 해악성을 토의해 보도록 한다.(얻은 것 - 재미, 스트레스 해소, 사이버 친구들, 잃은 것 - 가족, 친구와의 관계, 성적, 돈, 육체적 정신적 건강)
- 중독성이 없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컴퓨터를 거실 등 공개된 장소에 두도록 한다.
- PC방에 가는 것을 막지 말고 시간제한을 정하고 조건부 숙제를 내준 후 그 보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이 때 PC방 주인과 만나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하고 관리를 부탁하고 협조를 구한다.
- 중증일 경우는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제로 인터넷에서 격리시켜야 함을 주지시킨다.

2. 흡연 중독

가. 흡연 중독의 징후

- 기침을 자주함 : 흡연으로 기도 내로 이물질이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도한 기도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킴으로써 기도를 보호하고자 정상적인 신체 방어기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흡연을 하는 학생의 경우 기침을 자주 한다.
- 가래를 자주 뱉음 : 기관지 점액 생성 자체는 우리 인체의 중요한 방어기전 중의 하나로 생리적 현상으로 흡연을 하는 학생의 경우 이러한 원인에 따라 가래를 자주 뱉게 된다.
- 교사와 대화할 때 정면을 피하고 옆으로 돌아서 이야기 함 : 흡연을 하는 학생의 경우 입에서 나는 악취는 가글이나 양치질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교사와의 직접적 대화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 교내 외출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함 : 집이나 학교 주변 상가 내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려고 외출 요구를 자주할 수 있다.
- 두통을 자주 호소하며 수전증을 보임 : 상습적 흡연은 두통이나 심한 경우 수전증이 오기도 한다.

니코틴 중독 과정

흡연을 할 때에 담배연기에 있는 니코틴은 폐를 통해서 혈류를 타게 됨으로서 뇌에 급속하게 전달이 되고 동시에 흡연 욕구를 충족해 준다. 혈중 니코틴 농도는 흡연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기 때문에 다시 흡연 욕구가 생기게 된다.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에 기상 후에 흡연 욕구를 심하게 느끼는 이유는 수면 중에 혈중 니코틴 농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니코틴 중독이 되는 것이다.

나. 체크리스트

<니코틴 의존도 검사법>

※ 다음 설문에 솔직히 대답하시고 계산을 해 보세요.

1. 하루에 보통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 []
 [0] 10 개비 이내 [1] 11 - 20 개비
 [2] 21 - 30개비 [3] 31 개비 이상
2.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
 [3] 5분 이내 [2] 6분 - 30분 사이
 [1] 31분 - 60분 사이 [0] 61분 이후
3. 금연구역(병원, 지하철, 극장 등)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렵습니까? []
 [1] 예 [0] 아니오
4. 하루 중 담배 맛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
 [1] 아침 첫 담배 [0] 그 외의 담배
5. 오후와 저녁시간보다 오전 중에 담배를 더 자주 피우십니까? []
 [1] 예 [0] 아니오
6. 몸이 아파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
 [1] 예 [0] 아니오

총합 점수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 ~ 2 점 : 낮은 니코틴 의존도 ○ 3 ~ 5 점 : 중간 정도의 니코틴 의존도 ○ 6점 이상 : 심한 니코틴 의존도 |
|--|

다. 흡연 중독의 예방 방법

1) 어린이 흡연 예방 교육

- 모든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자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 흡연은 나쁜 점이 많다.

건강에 대한 단기적 영향, 장기적 영향, 사회적 영향, 특히 당장 나타나는 불쾌감(냄새, 자극성 등)에 대해 가르친다.

-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유도한다.
-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건강에 대해 염려 한다.
가족들이 자신이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도록 한다.
- 담배를 피우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
흡연에 대하여 부정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도록 유도한다.
- 흡연을 하지 않는 적절한 역할 모형이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주변의 중요한 사람(부모, 형제, 선생님, 운동선수, 배우 등)들을 상기시키고 본받도록 한다.
- 비흡연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행동기술이 있다.
흡연권유 거절 기술,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권유하는 기술을 가르친다. 이를 통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친구를 사귀고 자아 존중감을 키운다.

2)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정부, 소매점, 학부모, 교사 및 청소년 등이 하나가 되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금연교육은 처치중심의 지도보다 흡연의 폐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흡연예방교육 및 생활지도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흡연예방교육은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 보건영역을 직접 지도하고, 직접 지도가 어려운 경우는 지도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지도 교사는 영상자료의 활용 등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질 높은 수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부모나 어른들이 스스로 금연하는 자세를 보여 청소년 스스로가 흡연에 빠져들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금연 지도 방법

- 가정과 연계된 금연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흡연의 징후를 1차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곳은 가정으로 흡연 학생에 대해서 처벌 위주의 대응방법보다 가정과 긴밀한 협조로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 각종 심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거나 인터넷이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흡연 동기를 탐색해보면 흔히 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근육이완 훈련법 등을 금연 프로그램과 같이 병행하면 효과적이다.
- 학생 개인에게는 담배에 대한 충동이 생길 때마다 악취나 구토장면 등의 혐오 자극을 심상화하는 이미지 치료법을 훈련시켜 매일 지속적으로 실천해 보게 하는 것도 강력한 방법이다.
- 담배를 끊겠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하게 한다.

II 공격적 문제 행동

1.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의 징후

1) 가정에서의 징후

- 비행 전력이 있거나 또래 폭력 집단에 속해 있다.
- 육체적 활동을 좋아하며 힘이 세다.
-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을 한다.
- 방화와 동물 학대처럼 반사회적 행동에 가담한다.
-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반복적으로 공격성을 나타낸다.
- 부모에게 이유 없이 반항하거나 무시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 참을성이 없고 화를 잘 낸다.
- 비밀이 많고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 외출이 잦고 친구들의 전화에 신경을 많이 쓴다.
-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하다.
- 돈 씹씹이가 크고, 사주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

2) 학교에서의 징후

-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한다.
- 교사와 눈길을 자주 마주치며 수업분위기를 독점하려 한다.
- 교사가 질문할 때 다른 학생의 이름을 대며 그 학생이 대답하게끔 유도하고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며 이유와 핑계가 많다.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다.
- 흥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손이나 팔에 종종 봉대를 감고 다닌다.

나. 체크리스트

※ 다음 중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로 체크해 주세요.

1.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엄수하지 않는다. []
2. 학생들 간에 언어폭력이나 신체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

- 3.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이 있다. []
- 4. 결석을 자주 하는 학생이 있다. []
- 5. 학교 물건을 파손하는 학생이 있다. []
- 6. 물건을 도둑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
- 7. 학생들 간에 힘 싸움이 있다. []
- 8. 옷이 자주 망가지는 학생이 있다. []
- 9.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학생이 자주 있다. []
- 10.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학생이 있다. []
- 11. 주변의 학생이 험담을 해도 반발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 []
- 12.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학생이 있다. []
- 13. 비싼 옷이나 운동화 등을 자주 잃어버리는 학생이 있다. []
- 14. 몸에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이 발견되고 물어보면 그냥 넘어
 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
- 15. 교과서나 일기장에 ‘죽어라’, ‘죽고 싶다’와 같은 폭언이나
 자포자기의 표현이 있다. []

체크리스트 결과	시 사 점	사후 대책
평균 7개 미만	○저위험 집단 : 학급 내 폭력의 가능성이 낮음	○학급의 분위기 유지에 주력 ○수시 설문 실시 변화 감지
평균 7개 이상	○고위험 집단 : 폭력위험에 처한 학생이 많음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연계 ○정기적인 폭력 예방 교육

다. 학교폭력 예방 방법

1) 학교의 역할

- 학교폭력 문제 담당 책임 교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한다.
- 학교폭력 신고를 의무화하여 학교별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및 홈페이지 활용 신고, 상담 활성화, 신고망 홍보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 발생 통계, 안전사고 발생 통계, 상담 실적 통계 등 학생 생활지도 관련 통계 자료의 NEIS 입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 학생자치회,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한 교내외 예방 교육 및 학부모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설문조사의 분기별 실시 및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강구한다.
- 학교폭력 추방의 날(학기별 1회),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연합교외생활지도, 성희

롱·성폭력·성매매·유괴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나 전문상담교사,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거나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CCTV를 설치·운영한다.
- 학생 안전 3대 과업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생명존중의식 고취, 교통안전 내실화를 위하여 3.3.2 학생 안전사고 예방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2) 교사의 역할

-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사람은 담임교사를 비롯한 각급 학교 일선교사들임을 인식한다.
- 교사는 늘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여 학생들과의 상담 및 면담 활동을 통해 폭력 발생의 징후를 감지하고 학급의 분위기 변화에 대해 민감한 시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피해자나 가해자로서 학교폭력의 잠재적 희생자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학교폭력을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질문지 등을 자주 실시하며, 교사는 학생의 변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 특정 학생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학생들의 행동과 수업 분위기, 집단 활동이나 점심시간 등의 휴식시간에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수시면담을 통해 학생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학교폭력의 징후를 감지한다.
- 학급회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의사 결정의 기회를 갖게 한다.
- 소집단 구조를 파악하여 좌석 배치에 반영하며 고립된 학생이 없도록 배려한다.
-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이 발생할 경우
 - 문제 행동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얻어내기 위하여 일단 아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린다.
 - 가해와 피해 상황만을 냉정하게 체크하고 초기단계부터 지도한 내용을 수집하여 문서로 남긴다.
 -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서를 반드시 확보한 후 학부모에게 상세한 설명과 함께 협조를 구해야 한다.
 - 가해 학생은 ‘범인’이 아닌 ‘환자’로 인식하여 지도한다.
 - 문제 학생과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 후 폭력의 부당함을 충분히 인식시킨다.
- 피해 학생이 발견되었을 경우

- 교사는 피해 학생의 상태와 신변 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 교사는 해결사의 역할과 따뜻한 상담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해야 한다.
- 피해 학생의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안심시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수시로 학생들에게 가장 힘들거나 괴로운 일을 쪽지나 일기에 써서 낸다든지, 등·하교 길에 친한 또래 친구와 함께 하도록 한다.

3) 담임교사의 역할

- 학교 폭력 사고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담임교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항상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학교폭력을 반복적으로 일으킨 학생에 대한 지도,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심리적으로 위축된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 무단이탈에 대한 지도)
- 학교폭력은 가·피해 학생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며, 학교폭력은 반드시 알려지게 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됨을 인식시켜야 한다.
- 학생·교사 간 대화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틈틈이 상담을 하고 청소도 함께 하는 등 학생들 놀이에 참가해 보며, 교사와 학생 간의 일기 교환도 좋은 방법이 된다.
- 더 친밀한 인간관계를 위해 집단 활동을 소집단으로 편성하고 집단 전원의 교류를 증진시키며,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급을 경영함에 있어 학생들의 비행에 대한 일관된 규칙과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갖춘 환경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기표현 훈련, 자기주장 훈련이 유용하며 자기 탐구 프로그램이나 사이코드라마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학기 초 힘 과시를 위한 폭력이 빈번하므로 적절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전문계고등학교 1학년에 빈번히 일어남).
- 체험학습, 축제, 야외특별활동, 방학 등을 앞두고 금품갈취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인터넷 게임을 위한 사이버 머니 갈취와 연계된 폭행 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신고체제를 홍보한다.
- 담임교사는 주기적으로 폭력 예방 쪽지 상담을 하고, 조·종례 시간에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훈화를 실시한다.

4) 부모의 역할

- 자녀에게 친구를 놀리거나 소외시키고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것을 알려준다.
-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으로 자녀가 등교하기 전에 “○○이는 잘하고 있어.,” “○○이는 참 잘한다.”라고 칭찬한다.
- 자녀와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매일 최소한 30분 이상 대화한다.
-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야.”라고 말한다.
- 신학기일수록 자녀의 신체, 의복, 씻기 등을 더욱 신경 쓴다.
- 자녀의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음식을 사주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 새로 바뀐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읽어 본다.
- 자녀에게 불리던 별명이 있다면 미리 집에서 별명에 대한 대처 요령을 가르친다.
- 자녀가 비싼 학용품이나 소지품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지도한다.
- 자녀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안 돼, 하지 마, 그만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도록 집에서 미리 연습을 시켜야 한다.

III 부적응 문제 행동

1. 집단따돌림

가. 집단따돌림의 징후

1) 가정에서의 징후

- 옷, 안경, 소지품 등을 자주 잃어버린다.
- 몸에 난 상처나 멍 자국을 숨긴다.
- 교과서나 공책에 ‘죽고 싶다’, ‘죽어라’ 같은 낙서가 발견된다.
-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거나 말도 없이 집에서 돈을 가져간다.
- 풀이 죽어 들어와 방안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 친구에게 전화 오는 것조차 싫어한다.

2) 학교에서의 징후

- 수업시간에 특정 학생에게 야유나 험담을 많이 한다.
- 주변학생에게 험담을 들어도 반발하지 않는다.
- 학급 집단 속에 몇 개의 폐쇄적인 소집단이 생긴다.
- 체육, 점심시간, 야외활동시간에 따로 떨어져 행동한다.
- 옷이 지저분하거나 구겨져 있고 단추가 떨어져있다.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자신감이 없고 머뭇거리거나 친구의 심부름을 자주 한다.
- 자주 지각을 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결석이 잦아진다.
- 상담실 앞을 서성이거나 보건실을 찾는 횟수가 잦다.
-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불리어진다.
- 각종 모둠 활동에서 소외된다.
- 수업시간에 의기소침해 있고, 교사와 눈을 맞추지 않는다.

나. 체크리스트

1) 부적응

※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구분하여 표시하세요.

<교사와의 관계>

- 1. 나는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 2. 선생님을 길에서 보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
- 3. 우리 학교에는 내가 닮고 싶은 선생님이 계신다. []
- 4. 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자주 하더라도 잘 설명해 주신다. []
- 5.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 []

<친구와의 관계>

- 6.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
- 7.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 []
- 8. 나는 여러 친구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집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
- 9. 학업 문제를 친구들과 의논할 때가 많다. []
- 10.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 줄 친구가 많다. []

<학교 규칙 준수>

- 11. 나는 등교 시간을 잘 지킨다. []
- 12. 나는 주변 활동을 열심히 한다. []
- 13. 나는 학교의 시설을 아끼고, 질서를 잘 지킨다. []
- 14.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
- 15. 나는 학교의 질서와 규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표가 많은 영역에 대하여 담임교사, 혹은 상담교사와의 면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간편 진단법(Conners의 평가지)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전혀 없음(0점), 약간(1점), 상당히(2점), 아주 심함(3점)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세요.

1. 차분하지 못하고 너무 활동적이다. []
2.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다. []
3.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 []
4.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 한 번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다. []
5. 늘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해한다. []
6. 주의력이 없고 쉽게 주의가 분산된다. []
7.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쉽게 좌절한다. []
8. 자주, 또 쉽게 울어버린다. []
9. 금방 기분이 확 변한다. []
10. 화를 터뜨리거나 감정이 격하기 쉽고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 []

교사가 평정한 10개 행동의 점수를 모두 더해 16점이 넘으면 주의력결핍 및 과잉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심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2. 학교 부적응 예방 방법

가. 지각

- 잦은 지각의 원인을 파악한다.
- 통학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학생과 대안을 논의한다.
- 지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적절한 칭찬으로 보상을 한다.
- 감정적인 꾸중이나 체벌은 하지 않는다.
- 문자 메시지를 통해 관심을 표현한다.
- 잦은 지각이 무단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린다.

나. 무단결석

- 다시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교우관계 조사 및 학부모와의 면담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지도를 통해 상습화되지 않도록 한다.
- 결석생에 대해 교사는 물론 학급친구들 모두 관심을 보여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 및 모든 지도 내용을 반드시 기록한다.
- 필요시 가정방문을 통해서라도 원인을 밝혀야 하며, 수업일수 2/3이상 출석하지 못할 경우 유급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②항)을 알려야 한다.
- 장기결석의 경우 내교통지서, 출석독촉장 등을 발송(내용증명)하고, 가정방문(출장 처리)은 가급적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이 동행하되 여학생의 경우는 여교사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
- 학생이나 부모 부재 시에는, 메모를 남기거나 관리사무소 또는 통장을 찾아가 방문 사실 확인 및 학생 지도 협조를 당부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 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관리 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①항)을 알려야 한다.

다. 피병

- 보건실을 자주 찾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다.
-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건강상의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게 한다.
-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도피 행위라면 보건실 출입을 점차 줄여가는 점진적인

목표를 세운다.

- 교사나 학생들에게 주목을 끌고자 하는 경우라면 보건실 이용에는 무관심, 잘 지낼 때에는 관심을 표현한다.
- 잦은 보건실 출입이 다른 학생들과 수업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라. 불성실

- 행동의 배경을 이해한다.
- 학생에게 학교 및 단체 생활에 대해 이해시킨다.
- 규율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한다.
- ‘네 멋대로 해라.’ 라는 식의 발언은 삼간다.

마. 약속 불이행

-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의 근본적 이유를 찾는다.
-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생각할 시간을 주고 다시 한 번 묻는다.
-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 부득이한 상황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경우, 미리 연락할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바. 남 탓하기

- 어떤 성장 배경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게 하는지 파악한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앞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한다.
-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름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 불공정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무기력

- 무기력증의 행동 배경을 분석한다.
-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관심 분야의 긍정적 모델을 만나게 한다.
- 성취 가능한 범위에서 역할을 부여한다.
- 학생들이 잘 하는 분야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각시킨다.

아. 참여 거부

-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게 된 이유를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 알찬 구성으로 유익하게 느끼도록 한다.
- 학생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 목표한 수준에 도달하면 적절한 칭찬과 보상으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자. 거짓말

- 왜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다.
- 담당 선생님이 학생의 거짓을 알고 있으며,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고 있음을 알게 한다.
- 진실을 말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 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학생의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준다.

차. 도벽

- 정확하고 냉정한 관찰을 통해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 가족구성원, 학급구성원들의 생활자세가 중요하다.
- 적절한 소유개념을 이해시키고 가르쳐야 한다.
- 취미나 흥미를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부모, 교사의 인내와 노력이 요구된다.
-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기에 치유하도록 한다.

카. 집단따돌림

-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교내에서의 따돌림 실태를 파악한다.
- 각종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내에서의 따돌림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한다.
- 인성교육 참고자료
 - 사랑이 함께하는 학교(장학자료2009-49호, 경기도교육청)
 - 아름다운학교 행복한 교실 만들기1~3(교육인적자원부)
 - 중등 내 마음을 펼쳐요(교학사)
 - 학급활동으로 이어가는 집단상담(우리교육)
 - 빛깔이 있는 학급운영1~3(우리교육)
 - 행복을 가꾸는 교실(우리교육)

IV 성관련 문제 행동

1. 이성교제

가.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특징

-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혼성집단에서 시작되어 친밀한 개인적 관계로 발전한다.
- 연인과 친구 사이의 분화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미래에 대한 약속 없이 서로 즐기는 연애행태를 취하기 쉽다.
- 육체적인 매력과 욕망이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 청소년기는 정신적 미성숙과 신체적 성숙간의 갈등의 시기로 이시기의 이성교제도 신비감과 갈등을 동반한다.
- 관심을 보이는 이성에게 무조건적 호감을 표현하기도 하며 우발적인 연애행태를 형성하기도 한다.
-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이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성적인 욕구와 애정적 욕구에 대한 확신이 없이 행동하기 쉽다.
- 감각적 사고와 외적 자극에 민감하여 자극에 즉각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충동적인 행위를 하기 쉽다.
- 구체적인 사고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추상적인 관념에 빠져 행동하기 쉽다.

나.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순기능

- 여러 사건과 갈등을 겪으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 이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가시켜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요소를 배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자신감과 안정감을 주고 정서적인 균형감을 가질 수 있다.
- 남녀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배우고 이성과의 관계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다.
- 동성이나 이성의 또래 집단에게서 인정받게 해주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 낭만적이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오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배우자 선택의 기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자신의 성 역할을 배우며 행동이나 성격 수정을 도울 수 있다.
- 이성교제를 통한 남·녀 간의 상호접촉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하여 자신에 대

한 이해 및 자아의식을 성숙시킬 수 있고 자아평가의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다.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역기능

- 학생의 경우 이성교제에 몰두해 학업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 이성교제에서는 경쟁적 요소가 강조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불안정감이나 열등감을 줄 수도 있다.
- 이성교제를 잘못하면 유희행동이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퇴폐적 행위로 끝날 수 있다.
- 결혼 전의 성행위 통제가 문제가 된다.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짐에 따라 신체적 접촉으로 발전하게 되며, 어느 정도에서 신체적 접촉을 제한할 것인가가 비행의 문제와 관련된다.
- 이성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과장된 언어나 행동으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거나 지나친 행동의 결과로 수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 건전한 이성교제 방법

- 나와 이성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 먼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존중 받을 수 있다.
-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기른다.
- 건전한 이성 관계는 서로의 존중에 그 기반을 둔다.
- ‘NO’라고 말해야 할 때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 폭력을 행하는 이성과는 확실하게 결별해야 한다.
- 보호자에게 데이트 장소, 시간,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 상대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완벽한 이성은 없다.
- 나의 행복은 나에게서 비롯되므로 남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이성교제 시 지켜야 할 예절

-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 둘이 만날 때는 계획을 세운다.
- 공개적이고 건전한 장소에서 만난다.
- 평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의와 품위를 지킨다.

- 이성과의 대화를 건전하고 진지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 상대를 대할 때는 진실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 상대의 말을 가로막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 그룹으로 만나 함께 활동하며 은밀히 만나지 않는다.
- 둘의 만남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도 고려한다.
-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
- 함부로 손을 대려고 하면 그만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 신체적 애정표현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엄격하게 설정한다.
- 데이트 비용을 적절히 분담하여 한쪽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바. 이성교제 지도 방법

- 이성친구와의 신체적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 단계를 넘어 서면 그 다음 단계를 바라게 되는 성 접촉의 심리적인 특징을 알게 하고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육체적 심리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선에 도달하게 되므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한계는 어디까지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좋아하는 이성 친구의 기분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나 전달법’등의 의사 소통방법을 지도하여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 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 서로의 성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관계가 되도록 지도한다.
- 건전한 집단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개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집단의 규제나 자기 조절력이 작용하기 쉽고 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한다.
- 이성교제 중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인 행위에 대해 결정할 권리인 성적 자기 결정권은 상대의 감정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의 느낌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함을 지도한다.
- 이성 간에 지켜야 할 예절 및 건전한 이성교제를 유지하는 방법 등을 수시로 지도하여 단순한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성폭력

가.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성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강 간 :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적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테이트 중에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성희롱 : 눈짓(위아래를 훑어보거나 뚫어지게 보기), 음란전화, 성을 암시하는 몸짓이나 표정 또는 소리, 테이트 강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휘파람불기, 성관련 루머 유포 등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포함된다.
- 성추행 : 성욕의 자극, 흥분,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나. 성폭력 피해 학생의 징후

- 잠을 못자고 악몽을 자주 꾸는다.
- 평소보다 행동을 과장되게 꾸민다.
- 걷거나 앉는 것이 불편해 보인다.
- 아이답지 않은 슬픔, 우울, 불안, 공포를 보인다.
-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남을 피하게 된다.
- 혼자 있으려 하지 않고 혼자 나가지 않으려 한다.
- 말을 잘 안하고 짜증, 신경질, 욕설을 자주 한다.
- 갑작스런 성적 언어 및 성적 행동을 하게 된다.
- 갑자기 필요 이상으로 눈치를 보게 된다.
- 갑자기 음식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 강박적 행동(잡은 양치질, 손 씻기, 옷 갈아입기 등)을 보인다.
- 자주 몸이 아프다고 하며 가벼운 신체 접촉에도 놀라고 당황한다.
- 친구나 활동에 대해 갑자기 관심이 없어진다.
-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해 및 반항의 태도를 보인다.
- 자살이나 임신 등의 낙서를 하기도 한다.
- 특정 장소에 대한 혐오감과 지나친 두려움을 보인다.

다.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 신체적 측면 : 통증, 상처, 메스꺼움, 구토, 두통, 식욕상실, 수면장애, 성병 등
- 인지·정서적 측면 : 충격, 부인, 분노, 의기소침, 움츠림, 냉담, 수치심, 감정표출억제, 악몽, 환각, 집중력상실, 우울증, 자존감 상실, 신뢰감 상실, 자살충동, 심리불안 등
- 행동적 측면 : 과다경계, 수면장애, 과장된 놀람, 돌발적인 공격, 자해, 물질남용, 과장된 감정 반응 등

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 성폭력은 여자만이 피해자가 된다.
➔ 남자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 실제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70%이상을 차지한다.
- 성폭력은 20대 젊은 여자에게 일어난다.
➔ 실제 성폭력 피해자의 50% 이상이 19세 이하 청소년과 아이들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일어나며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 성폭력은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서 기인한다.
➔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생각이며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의 나이, 옷차림, 행동, 외모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만 가해자가 될 것이다.
➔ 실제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가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고학력자들이 많다.
- 성폭력은 무시하고 두면 사라진다.
➔ 가해자들은 성폭력을 가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자기 의지로는 절대로 멈출 수 없다.

마.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

- 상대방의 “NO”는 “아니오”라는 의사표시이지, 한 번쯤 빼보거나 내숭을 떠는 것이 아님을 명심한다.
- 상대방의 “NO”라는 의사가 아무리 가볍게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꾸 강요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임을 명심한다.
- 여자친구가 “NO”라고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강행한다거나, 성행

위를 하는 것은 분명한 성폭력행위이고, 범죄행위임을 명심한다.

- 성폭력의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를 생각하고 성폭력범죄는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해지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한다.
- 성행위는 임신이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명심한다.
- 비디오, 만화, PC통신, 인터넷 등의 각종매체에 나타난 음란한 성 묘사는 과장되고 비정상적인 것임을 명심한다.
- 성과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예의와 책임감이 없는 것은 일종의 죄악임을 명심한다.

바. 성폭력 피해학생 지도 시 유의 사항

- 판단하거나 절대로 비난하지 말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 성폭력은 피해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켜 죄책감을 없앤다.
- 피해학생이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도록 도와준다.
-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가족이나 선생님에게 알림으로써 다음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 피해학생이 보살핌과 관심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전문상담가나 심리치료를 통한 심리치료가 병행되도록 한다.
- 피해 학생에게 혼자서 아님을 인식시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

사. 청소년 성매매

1)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및 특징

- 신체적 성숙에 따른 성적 성숙과 성의식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만 및 자아존중의 결여에서 기인한다.
- 가정의 기능장애로 가출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부족하다.
-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경제적 욕구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 산업자본주의와 성 개방물결로 인해 퇴폐적 성문화와 비도덕성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 성인들의 사치성 소비향락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모방되어 비판적인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청소년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소비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은 대부분 여학생이다.
- 원래 사이버 원조교제는 사이버 상에서 만남이 성사되어 현실에서 직접 만나 성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이제 사이버 상에서 또는 전화로 성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사이버머니로 지불하거나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의상인 액세서리를 선물하는 형태로 사이버 상에서 모든 것이 완결되는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2) 성매매 예방 교육

- 학생들에게 유익한 다양한 놀이의 개발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장기적 가출의 경우 성매매와 연결되기 쉬우므로 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 지도한다.
- 성교육 및 바른 인성 교육을 위한 훈화를 자주 실시하여 건전한 성의식의 형성을 돕는다.
- 바른 경제교육을 통해 건전한 소비의식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므로 사이버 유해환경 차단 수단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와 연계 지도한다.
- 원조교제가 조장하는 광고나 이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전화방, 대화방 등 학교 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3.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 방법

가. 학교에서의 성관련 연수 실시

-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간 추진 계획 수립
- 예방 교육과 연수 강화 : 학생·교직원 연수 학기별 1회 이상
- 성범죄 신고 강화 및 상담의 활성화
- 성폭력 관련 신고 및 지원 시스템 홍보
 - 경찰서 : ☎ 112
 - 여성 긴급전화센터 : 국번없이 ☎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국번없이 ☎ 1388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활용
 - 아주대학교병원 : ☎ 031-216-1117
 - 의정부의료원 : ☎ 031-874-3117

- 피해학생 보호 조치 및 가해학생 사고 재발 방지 노력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
 -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무 연수
 - 고등학교 교감 및 성폭력 예방 담당교사, 지역교육지원청 성교육담당 장학사, 전문상담교사 대상 권역별 연수 실시
 - 성교육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전달 연수, 상담, 관련 교사의 수업지원 등

나.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내 SAFE-ZONE 지정 운영 :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외부인 접근 제한구역 표시 및 출입 제한, 안전 담당자 상주
- 학교내 ‘배움터지킴이 배치 운영 : 교내 및 학교 주변 취약지구 순찰을 위한 학교 안전생활 지도 보조 인력 활용
- 휴업일, 공휴일, 방학 등 학교 경비구역의 교내 순찰 강화
- 학교내 CCTV 설치 운영
- 학교내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 교직원은 명찰, 외부인은 방문증 패용을 의무화 하여 무단 외부인 식별요령 교육 및 신고 등 관리
- 학교내 사각지대 안전도 개선 : 밝은 조명등 설치, 비상벨 설치, 호신용 장비(호루라기 등) 소지 권장
- 초등학교 안전대책 전담기구 활용 : 학교(학생안전대책위원회), 지역교육청(초등학교안전대책팀), 도교육청(초등학교안전대책반)
- 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활용 : 방과후학교 불참 학생 통보 및 귀가 시간 문자서비스 제공
- 전문상담교사, 유관기관 연계 학교안전망, 어머니폴리스(마미킵) 협력

다. 성폭력 대처 교육

- 성폭력 발생 시 신고 : 교사는 청소년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경찰서 등의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함
- 성폭력 사건 대처 시 주의 사항 : 피해자가 누구라는 사실이 주변의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 전문 상담기관 이용 방법에 대한 사전 인지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 피해학생 비밀 엄수, 피해학생 보호자와의 협의,

피해학생 출석 처리(교과부훈령 제61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및 전학 조치 : 가해자가 만10세 미만이라도 학부모 동반 특별교육이수를 권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은 교육적 차원에서 특별교육이수 후에 조치
- 성폭력 관련자 상담의 유의 사항 : 피해학생 중심 사건 지원, 당사자 비밀보장을 최우선, 신속한 위기 개입, 부분이 아닌 통합적(의료적, 법적 수사 과정, 학업 지원, 가족 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인 접근, 전략적(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인 상담 필요

라.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사회변화로 사회적 준비없이 성문화 개방 · 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 겪는 학생 급증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 여러 단계의 문서를 종합한 유기적 체계로 학생의 안전 교육 진행
양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언어성폭력, 성희롱, 아동성폭력 · 장소, 시간, 대상을 막론하고 무작위로 나타남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시간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 연 10시간 이상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 · 관리자, 교직원 : 연2회 이상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 성폭행·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실시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상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단순 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는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보지 않음) · 수학여행, 수련회, 단체체육활동, 직원연수 등 단체 활동시 사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사후 평가항목에도 반영 · 전문계고등학교 3학년은 취업시기 이전에 특별교육 반드시 실시 ·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은 가급적 수능 이후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 · 가정과 연계를 통한 학부모 교육 강화
성희롱 판단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관점을 전적으로 인정 ·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 ·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적 관계는 성희롱이 아님 ·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음

라. 성폭력 발생 처리 방법

- 성폭력 사안 처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 성폭력 사안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법적 신고 사항으로 학교 직접 처리 불가)
- 학교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철저
- 학생과 학생간의 성폭력 경중에 따른 처리 방법

구분	경미 사안	중대 사안
사안유형	지속적인 성놀림, 경미한 성추행 등	강제 추행 이상
처리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수사 기관 신고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 학생 성폭력 중대 사안 보고

- 사건 발생 즉시 사안 보고(6하원칙으로 사건 내용과 경위 등 명료하게 작성)
- 성폭력 발생시 신속·정확한 사안 보고(축소, 은폐, 허위보고 금지) 및 응급 처치, 신변 보호 조치
- 학교내 보고 : 최초 인지 교사 → 책임교사(보건교사) → 담임교사, 교장, 교감, ※ 학부모 : 담임교사가 연락
- 상급기관 보고 : 학교 → 지역교육청 → 시·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 사건 종결 보고 : 학교 → 지역교육청 → 시·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V 가정적 문제 행동

1. 가출

가. 가출의 징후

-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져있다.
- 기분의 갑작스런 변동, 감정폭발, 무감정, 권태, 과민, 강박관념을 보인다.
- 만성적 피로, 조기 기상, 불면, 수면증가의 현상이 나타난다.
- 가족과 단절, 가족규칙 위반, 식사 등의 일로 가족과 모이는 것을 회피한다.
- 성적하락, 무단결석, 수업 빠지기, 혼욕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 이전 친구로부터 철회, 이전 친구를 거부 또는 공개적인 적대감을 보이고 가족과 부모에게 새로운 친구 소개하기를 주저한다.
- 침착성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거짓말을 한다.
-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흥미를 잃는다.
- 특정한 친구와 밀착되며 문제 행동을 유발한다.
- 자주 실의에 빠진다.
- 화를 자주 내며, 가혹한 행동을 한다.
- 학습과 놀이습관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 각종 가족행사의 참여에 흥미가 없다.
-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간다.
- 건강이나 기타의 이유로 학교에 지각이나 조퇴를 자주한다.
- 두발이나 몸가짐이 학생의 모습을 벗어나며 화장을 하기 시작한다.
-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등교를 거부하거나 자신과 가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 친구의 생일이나 여러 핑계로 외박을 시도한다.

나. 체크리스트(부모용)

※ 다음 문항들을 읽고 ○,×로 체크해 보세요.

1. 부모와 점점 대화가 없어진다. []
2. 집에 있는 것이 따분하다고 짜증을 자주 부린다. []
3. 집이 답답하다는 호소를 한다. []
4. 귀가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가끔 외박도 한다. []

5. 늦게 귀가하여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물어보면
 얼버무리거나 거짓으로 말한다. []
6. 방과 후 학원이나 독서실에 간다고 해서 확인해 보면 없는 경우가 많다. []
7.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해서 확인해 보면 없는 경우가 많다. []
8. 부모가 말을 붙이면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는다. []
9. 부쩍 필요 이상의 용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
10.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투덜거리며 특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위협한다. []
11. 사귀는 친구들이 주로 노는 아이들이 많고 중퇴, 자퇴했거나
 가출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 []
12. 늦은 밤에 친구들이 불러내면 핑계를 대고 꼭 나가려 한다. []
13. 학교를 자주 빠진다. []
14. 학교에 다니기 싫다는 소리를 자주 한다. []
15. 방과 후 비디오방, 게임방, 당구장 등 유흥업소 출입이 잦다. []
16.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학교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닌다. []
17. 쉽게 돈을 벌 궁리를 하면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한다. []
18. 방문을 자주 잠근다. []
19. 가방을 자주 찐다. []
20. 돈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한다. []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방법

이 중 몇 개의 사항에 체크하셨습니까? 체크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가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자녀가 이러한 징후를 보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자녀의 문제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라는 관심을 보이고 자녀의 고민을 함께 걱정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대하며 부모님은 자신의 청소년기를 회상하면서 공감 하도록 노력해주세요.

다. 가출 예방 및 지도 방법

1) 가출 직후 확인할 사항들

- 가정이나 학교, 친구 간에 가출 원인이 될 만한 사건이나 이유
- 가출 경력이 있었다면 귀가하게 되었던 경로
- 최근 행동상의 변화 및 친구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의 내용
- 가출 전 가까이 지내던 친구의 이름과 연락처

- 자취를 하거나 부모가 부재중이어서 출입이 자유로운 친구 집
- 옷이나 소지품, 핸드폰을 챙겨 들고 나갔는지 여부
- 갖고 나간 돈의 액수 및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소지 여부
- 전화가 왔다가 말없이 끊기는 경우

2) 가출청소년을 찾기 위한 지침

-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거나 찾게 되면 알려줄 것을 부탁한다.
- 학교 주변의 PC방, 한밤중 놀이터 등 주변을 배회하는지 살펴본다.
- 통장이나 현금 카드를 가지고 나간 경우에는 잔금을 2~3만원씩 유지시켜, 돈이 떨어져 나쁜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며 출금된 돈을 추적하여 대강의 위치를 파악한다.
- 가출 한 달 전 전화 발신 내용을 전화국에 확인해 보면 빈번히 전화했던 곳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시외전화의 경우 위치를 알 수 있다.
- 친구, 학교, 이웃, 친척 혹은 자녀의 행방을 알 만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자녀로부터 어떤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자녀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화를 내지 말고 침착하게 대해 준다. 만일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쉼터나 상담기관의 연락처를 알려 준다.
- 자녀가 전화할 것을 대비하여 항상 집에 사람이 있게 하며, 전화를 수신가능 상태로 둔다.

3) 가출한 청소년의 소재가 파악되었을 때

-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자녀의 귀가의사 여부를 묻고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한다.
 - 집에 들어오고 싶지만 죄책감이나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 가출한 상태로 지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 억류, 협박, 빚 등으로 인해 귀가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지?
- 가출한 자녀가 처해 있는 상황(동거자, 기거형태, 생활수단 등)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귀가할 의사가 있을 경우 추궁하지 말고 감싸며, 친한 가족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응어리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
- 귀가 후 재가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개인이나 업주 등의 연락처를 알아둔다.

- 귀가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가 양보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되, 집에서 다니도록 타협한다.

-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친한 친구를 통해 귀가를 설득한다.

4) 가출했던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 안전하게 귀가한 것에 대해 관심을 보여준다.
- 가출 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한다.

5) 청소년이 가출하기 전 생각해 보아야 할 10가지

- 집을 나오기 전 상황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집을 나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가출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요?
- 가출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 내가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가출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나요?
- 가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았나요?
- 가출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 나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연락하겠어요?
-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2. 한 부모 및 다문화 가정 중 문제 학생의 특징

가. 이혼가정 중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의 특징

- 죄책감 : 자신이 나쁜 행동을 했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부모가 이혼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비난하고 우울해 한다.
- 분노와 공격성 반응 : 화를 잘 내고 불복종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 우울·불안 : 슬픔, 상실감, 이혼에 대한 거부감, 부모에 대한 분노, 무력감, 강한 외로움, 의기소침한 반응을 나타낸다.
- 재결합에 대한 환상 :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은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집을 떠난 한쪽 부모가 다시 되돌아와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
-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적응 : 부모가 이혼한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느낌을 갖는다.
- 학업과 행동의 문제 : 집중력의 저하와 우울감 때문에 자신의 심리적인 에너

지를 학업에 전적으로 투여하지 못한다.

- 유기공포 : 부모가 이혼하여 어느 한 부모가 가정을 떠나면 자녀는 함께 살고 있는 부모조차 자신을 버리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두려움을 경험한다.
- 충성심 갈등 : 부모들의 갈등에 휘말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 애도의 과정 :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들이 갖는 느낌은 부모가 죽었을 때 갖는 느낌과 유사하다.
- 성 정체성 교육의 부족 : 이성교제에 자신감이 없으며 부모의 이혼이 열등감과 수치심을 조장하여 자신이 매력적이지 아니라고 느낀다.
- 가정적 소속의 불안정 : 이혼한 후 양육권자의 양육 과정에서 양 부모 집을 오가며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나. 다문화 가정 중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의 특징

- 언어 문제 :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외국 어머니를 둔 자녀들로서 어릴 때부터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언어 발달이 지체되어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 학습·진로 문제 : 언어학습 문제가 가장 크며 언어로 인해 기타 학업에 대한 곤란을 경험하고 학습동기와 태도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 인성·사회성·인간관계 문제 : 위축, 불안, 억압된 분노,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 특성과 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나타난다.
- 정체성 문제 : 피부색, 외모, 다른 국적의 부모 등으로 인해 차별과 거절을 경험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
- 학교적응 문제 : 언어발달지체 및 문화적 부적응으로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교사의 다문화적 이해 부족과 편견 등에 의한 무관심과 방치, 낙인화, 낮은 기대, 관심의 결핍 등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이 지속, 악화되기도 한다.
- 기타 문제 : 학교생활 부적응 심화로 과생되는 등교 기피, 학업중단 충동, 학교 중도탈락, 구타, 교우관계 고립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다. 한 부모 및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도움 방법

1) 이혼가정 학생

- 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이혼 전후의 사려 깊은 의사소통으로 부모의 이

혼이 현실임을 받아들일도록 한다.

- 부모의 문제에서 자신의 미래를 분리하기 : 환경적 변화를 최소화하여 자녀가 부모의 갈등으로부터 빨리 분리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와 학교, 친구관계를 다시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 이혼의 개념화 : 이혼이 불가변한 것이라고 인식을 시켜야 한다.
- 자존감 높이기 :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스스로 자신의 장점과 강점들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여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킨다.
- 이혼가정 청소년 모임의 조직 : 이혼 가정 청소년 모임에 참여하여 서로 이해하고 돕는 방법을 공유한다.
- 경제적 지원 : 이혼 가정 자녀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경제적 궁핍에 대한 불만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정서적 지지 : 자신의 상황이 어른들에 의해 결정된 것에 대한 원망으로 타인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감과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2) 다문화 가정 학생

- 교사 자신이 먼저 다문화 가정 학생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학생으로 수용하고 자연스럽게 대한다.
-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지도 중점 사항으로는 언어능력, 학교생활적응력, 학력 향상 및 정체성 함양 등을 들 수 있다.
- 소외, 놀림, 차별 등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학교공부나 숙제 및 준비물 챙기기 등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더 많이 직면하므로 이를 조력할 상담 방안을 찾는다.
- 다문화 가정 학생의 개인, 가정,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지역사회 및 매체와의 관계에서 학생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개입해서 약화시킨다.
- 학생의 긍정적 행동특성과 품성을 계발하여 주고, 자신의 강점이나 장점을 자각, 발견하여 강화하도록 상담·지도한다.
-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개입 방안으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동기고취와 잠재력 계발, 일반 학생 및 교사의 개방적 태도와 관심 증진, 학부모의 적극적 협조 이끌어내기,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받기, 대학생 등의 도우미 활용하기 등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

2부

생명 존중(자살 예방) 교육

- I. 자살에 대한 바른 이해
- II. 자살문제 행동
- III. 자살위기 대처 방법
- IV. 처리 절차
- V. 청소년 자살 사후 개입



I 자살에 대한 바른 이해

1.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

- 자살자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뿐이지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자살하려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살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2. 자살에 대해 아는 것이 자살 예방의 시작이다.

-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당혹감을 느낄 뿐 아니라, 자살에 대해 많은 오해나 편견을 갖고 있다.
- 자살에 대한 편견을 버린 올바른 인식은 자살하려는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일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자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OX퀴즈]

1. 자살하려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
2. 자살하겠다고 얘기하는 청소년들은 실제로는 자살하지 않는다. []
3. 자살하거나 이를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보통의 청소년들과는 다르다. []
4. 자살하는 청소년은 죽으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
5.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 []
6. 자살하려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 []
7. 자살을 시도했던 청소년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안심해도 된다. []
8. 대부분의 자살한 청소년들은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다. []
9. 자살은 유전된다. []
10.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 []
11. 자살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경우, 어떤 경고나 단서도 없이 자살한다. []
12. 자살에 대해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률을 증가시킨다. []

출처 : 청소년 자살 예방프로그램 지도자용 지침서 “높이 날아올라 새롭게”(2009). 한국청소년상담원. 재인용(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2005).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자살에 관한 지식 OX퀴즈 해설]

1. O : 똑같은 상황과 문제에 처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영향을 다르게 받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2. X :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는 ‘도움을 찾으려는 외침’이다.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결과로 끝날 수 있다.
3. X : 자살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자살자들이 어떠한다는 일반적인 특성은 없다. 단지 자살 위험이 좀 더 높은 집단이 있을 뿐이다.
4. X : 대부분의 자살하는 청소년들은 삶이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자살위험을 무사히 넘기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따라서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위에서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O : 청소년들이 평소에 신체와 정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주변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위기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6. X : 자살을 한 사람들 중 일부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하려는 행동이 단지 정신질환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7. X : 자살하려던 사람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안심한다. 그러나 자살하려던 사람은 문제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또 다시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다. 기분이 좋아진 것으로 인해 자살 시도를 할 에너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할 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8. O : 자살한 청소년들이 친구들에게 자살 생각과 계획을 이야기했다는 증거가 많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황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비언어적인 몸짓으로 신호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
9. X : 가족 중에 누군가 자살로 죽었다면 유족들의 자살 위험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이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10. O : 자살하려는 청소년들은 처음에 방어적이고 도움을 거부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관찰한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심한 정서적인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정서적으로 고통을 나누어 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11. X : 10명 중 8명은 그들의 자살 의도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들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면 자살 의도를 알 수 있다.

12. X : 직접 내놓고 자살과 자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이야기해도 좋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민감성을 갖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을 보살피주며, 도와주고, 함께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

II 자살 문제 행동

1. 자살 징후

가. 언어적 단서

- ‘죽고 싶다.’, ‘끝내버리고 싶어.’,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지탱할 수 없어).’,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자주 한다.
- ‘내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나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등의 자기 비하적 표현을 자주 한다.
- 자살에 대해 말하거나 농담하는 일이 많아졌다.
- 자살에 대해 미화하거나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 심한 우울, 불안감, 무력감, 절망감을 호소한다.
- 사소한 일에도 과도한 자책감과 죄의식을 표현한다.

나. 행동적 단서

- 비정상적인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 말하거나 유언장을 쓴다.
- 평소에 아끼던 물건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준다.
- 자살과 관련된 낙서, 글을 쓰는 행동을 보인다.
- 자살에 사용할 도구나 장소(예: 약물, 노끈, 건물의 옥상 등)를 찾거나 감추어 둔다.
- 오랫동안 여행을 떠날 것처럼 주변을 정리정돈 한다.
- 잘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마구 먹는다.
- 자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 학교에서 멍하게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 행동이 매우 느리고 둔하거나 매우 초조하고 안절부절못한다.
- 침울하거나 괴로워하던 표정을 짓던 사람이 갑자기 평온한 상태를 보인다.
-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이 심해진다.
- 전에 좋아하던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다. 상황적 단서

-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 성적부진, 집단 따돌림 등 생활상의 심한 스트레스가 있다.
- 친구, 가족들 중에 자살경험이 있다.
- 절망감에 빠져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보이며 복수를 하려고 한다.

2. 체크리스트

가. 스트레스 체크리스트

※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0점), 약간 그렇다(1점), 대체로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로 구분하여 표시하시오.

1. 쉽게 짜증이 나고 기분의 변동이 심하다. []
2. 피부가 거칠고 각종 피부질환이 심해졌다. []
3.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고 여기저기 쭈신다. []
4. 잠을 잘 못 들거나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잠에서 깬다. []
5.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자기비하를 많이 한다. []
6. 별다른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해 한다. []
7.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
8. 매사에 집중이 잘 안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
9. 식욕이 없어 잘 안 먹거나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된다. []
10. 기억력이 나빠져 잘 잊어버린다. []

점수	스트레스 평가
00~05	거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음
06~10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11~15	비교적 스트레스가 심하므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16~20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신체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21점 이상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당장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함

자료 : 삼성서울병원

나. 우울증 체크리스트

항 목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거나 슬플 때가 있다.	1	2	3	4
2. 나는 하루 중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아침이다.	4	3	2	1
3. 나는 갑자기 얼마 동안 울음을 터뜨리거나 울고 싶을 때가 있다.	1	2	3	4
4. 나는 밤에 잠을 설칠 때가 있다.	1	2	3	4
5. 나는 전과 같이 밥맛이 있다(식욕이 좋다).	4	3	2	1
6. 나는 매력적인 여성(남성)을 보거나,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좋다.	4	3	2	1
7. 나는 요즈음 체중이 줄었다.	1	2	3	4
8. 나는 변비 때문에 고생한다.	1	2	3	4
9. 나는 요즈음 가슴이 두근거린다.	1	2	3	4
10. 나는 별 이유 없이 잘 피로하다.	1	2	3	4
11. 내 머리는 한결 같이 맑다.	4	3	2	1
12. 나는 전처럼 어려움 없이 일을 해낸다.	4	3	2	1
13. 나는 안절부절못해서 진정할 수가 없다.	1	2	3	4
14. 나의 장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4	3	2	1
15. 나는 전보다도 더 안절부절못한다.	1	2	3	4
16. 나는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4	3	2	1
17. 나는 사회에 유용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3	2	1
18. 내 인생은 즐겁다.	4	3	2	1
19.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편할 것 같다.	1	2	3	4
2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하는 것이 즐겁다.	4	3	2	1
총 계 ()				

점수	스트레스 평가
40~50	경미한 우울 증세이다.
50~60	비교적 심한 우울 증세로 심리 치료가 요망된다.
60점 이상	우울 증세가 매우 심각하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자료 : 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다. 자아존중감 체크리스트

항 목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다.	0	1	2	3	4
2. 나에게도 장점은 많다.	0	1	2	3	4
3. 나 자신이 맘에 들지 않는다.	4	3	2	1	0
4.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는 내가 초라해지는 것을 느낀다.	4	3	2	1	0
5. 될 수 있으면 거울을 보지 않는다.	4	3	2	1	0
6.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	4	3	2	1	0
7. 남들 앞에서는 내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대세를 따르는 편이다.	4	3	2	1	0
8.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0	1	2	3	4
9. 실수를 하면 금방 풀이 죽고 우울해진다.	4	3	2	1	0
10. 일이 잘못되면 내 탓을 많이 한다.	4	3	2	1	0
총 계 ()					

점수	해 석
30~40	자존감이 매우 강한 친구로 천성이 밝아 주위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주며, 매사에 긍정적으로 임하는 멋진 친구이다.
15~25	벌써 중도를 깨달았음인가? 자존감은 다소 낮은 편이지만 조용히 내실을 키우고 노력하는 친구이다. 대인관계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좀 더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잘할 수 있는 무언가에 더더욱 몰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10점 미만	세상이 두려운가? 모든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은가? Oh! No. 결코 아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들여다 보라. 매사를 비관적으로 보거나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지 말자. 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라. 청소년 자살 위험성 체크리스트

※ 다음 문항들을 읽고 거의 그렇지 않다(0), 가끔 그렇다(1), 자주 그렇다(2), 대부분 그렇다(3)로 구분해 봅시다.

1. 나는 흥분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
2.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
3. 주위 사람들을 별주거나 혼내주고 싶을 때면 자살을 생각한다. []
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느낀다. []
5. 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
6.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7.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
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적인 것 같다. []
9.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
10. 내가 하는 일들은 그런대로 잘 되는 편이다. []
11. 계속 살아갈 만큼 세상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진다. []
12. 나는 되는 일이 없다. []
13.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더 잘 살 것이라고 느껴진다. []
14. 이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
느껴진다. []
15. 나는 나의 어머니와 가까운 사이였고 지금도 그렇다. []
16. 일이 잘 되어 가리라는 희망이 거의 없다. []
17. 내가 한 일이나 나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 []
18. 어떻게 자살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19. 돈 걱정을 많이 한다. []
20. 무슨 일이든 잘해 나갈 수 있다. []
21.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
22.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순다. []
23. 나는 나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으며 지금도 그렇다. []
24.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
25.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잘 이해해준다. []
26.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
27. 나는 재수가 좋은 편이다. []
28.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 많다. []
29.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
30. 자살 생각이 든다. []
31. 내 주변 사람들은 대체로 나를 좋아한다. []
- 청소년 자살 예측척도의 하위 요인
- 부정적 자기 평가 : 2, 6, 10, 15, 20, 23, 24, 25, 27, 31 (10문항)
 - 적대감 : 1, 4, 5, 8, 22 (5문항)
 - 자살 사고 : 3, 11, 14, 18, 30 (5문항)
 - 절망감 : 7, 9, 12, 13, 16, 17, 19, 21, 26, 28, 29 (11문항)

마. 자살 생각 체크리스트

※ 다음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문항에 ○표 하시오.

1. 살고 싶은 소망은?	
0	보통 혹은 많이 있다.
1	약간 있다.
2	전혀 없다.
2. 죽고 싶은 소망은?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보통 혹은 많이 있다.
3. 살고 싶은 이유 / 죽고 싶은 이유는?	
0	사는 것이 죽는 것 보다 낫기 때문에.
1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4.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려는 욕구가 있는가?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보통 혹은 많이 있다.
5.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자살 욕구가 생길 때는?	
0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할 것이다.
1	삶과 죽음을 운명에 맡기겠다.
2	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6.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나 소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0	잠깐 그런 생각이 들다가 곧 사라진다.
1	한동안 그런 생각이 계속 지속된다.
2	계속, 거의 항상 그런 생각이 지속된다.
7. 얼마나 자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	
0	거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1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2	그런 생각이 계속 지속된다.

8. 자살 생각이나 소망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0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양가적이나 크게 개의치 않는다.
2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다.
9.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0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1	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2	전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10.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방해물이 있다면? (예: 가족, 종교, 다시 살 수 없다는 생각 등)	
0	방해물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1	방해물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쓰인다.
2	방해물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
11.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이유는?	
0a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b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 관심을 끌거나 보복하기 위해.
1	주변 사람의 관심을 끌고 보복하거나 현실 도피의 방법으로.
2	현실 도피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12.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계획했는가?	
0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	자살 생각을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2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생각해 놓았다.
13. 자살 방법을 깊게 생각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또한 시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나?	
0	방법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고 기회도 없을 것이다.
1	방법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2a	생각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며 기회도 있을 것이다.
2b	앞으로 기회나 방법이 생길 것 같다.
14.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0	용기가 없고 너무 약하고 두렵고 능력이 없어서 자살할 수 없다.
1	자살할 용기와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2	자살할 용기와 자신이 있다.

15. 정말로 자살 시도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나?	
0	전혀 모르겠다.
1	잘 모르겠다.
2	그렇다.
16. 자살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한 것이 있나?	
0	없다.
1	부분적으로 했다.(예: 약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
2	완전하게 준비했다.(예: 약을 사 모았다)
17. 자살하려는 글(유서)을 쓴 적이 있는가?	
0	없다.
1	쓰기 시작했으나 다 쓰지 못했다. 단지 쓰려고 생각했다.
2	다 써 놓았다.
18. 죽음을 예상하고 마지막으로 한 일은?(예: 보험, 유언 등)	
0	없다.
1	생각만 해 보았거나 약간의 정리를 했다.
2	확실한 계획을 세웠거나 다 정리를 해 놓았다.
19. 자살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혹은 속이거나 숨긴 적이 있는가?	
0a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b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하였다.
1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다가 숨겼다.
2	그런 생각을 속이고 숨겼다.

점수		연령집단에 비하여
고등학생	대학생	
16~19	14~17	자살 생각을 많이 함
20~23	18~21	자살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함
24이상	22이상	자살 생각을 매우 많이 함

자료: Beck's SSI

Ⅲ 자살위기 대처 방법

1. 비합리적 생각을 합리적 생각으로 바꾸기

비합리적 생각		합리적 생각	
형태	예	형태	예
경직된 생각	반드시 성적을 올려야 했는데	유연한 생각	성적이 올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과장된 해석	부모님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있는 그대로	부모님께 꾸중 듣겠구나
흑백논리	시험을 망쳤으니 내 인생은 끝이야	폭넓은 관점	시험을 늘 망치는 것은 아니야
부정적 판단	나는 정말 쓸모없어	긍정적 판단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2. 자살 생각 물리치기

1) 자신을 긍정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 난 괜찮아
- 그래! 그럴 수도 있지
-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럴 거야

2)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떠올리기

- 나에게 ()가 있어 참 좋아
- 나에게 ()가 있어서 참 행복해

3) 삶의 의미 떠올리기

무엇(삶의 목표 등)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힘이 되나요?

- ()는 내 삶의 의미, 행복
-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지

3. WHO 도움 청하기

1) 누구에게(Who) : 주변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 찾기

2) 어떻게(How) :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생각,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3) 상담기관의 도움(Organization) : 전문가의 도움 받기

기관명	전화	인터넷
한국청소년상담원	(02) 730-2000	http://www.kyci.o.kr
헬프콜 청소년전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http://www.1388.or.kr
한국생명의 전화	1588-9191	http://lifeline.or.kr
수원시자살예방센터	(031) 228-7942	http://www.csp.or.kr
한국자살예방협회	(02) 413-0892	http://suicideprevention.or.kr

※ 부록에 관련 기관들이 추가로 소개되어 있음

4. 청소년 우울증 대처하기

단 계	구체적 행동
우울증 발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와 달리 의욕이 없고 말이 없으며, 우울증상이 보일 때 우울증검사 등을 통해 체크한다. ○ 상담초기에 지나친 지지와 격려를 하는 것은 현재 자아상, 자신감과 상처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상생활 활동 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자기관리와 위생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섭식과 수면상태를 관리한다.
감정을 노출 시키도록 격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한 감정을 털어놓게 하여 스스로 그 내용을 분명히 알게 한다. ○ 우울과 관련된 과거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원인에 대해 통찰하게 한다.
우울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신체적 활동을 직접 찾아 실행하게 한다. ○ 대인관계의 확장 및 사회활동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외부모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우울증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가나 소아정신과에 진료를 의뢰한다. ○ 필요할 경우 약물치료를 병행하도록 한다. ○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점검하고 지도한다.

5.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돕기

- 주의 깊게 자살의 징후를 살핀다.
- 관심을 보이며,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질문은 직접적인 형태로, 자살에 대해 자유스럽고 공개적으로 묻는다.
-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그 감정을 수용한다.
- 자살이 옳은지, 나쁜지 또는 심리상태가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 논쟁하지 않도록 한다. 인생을 가치 또는 도덕관으로 설득하지 말아야 한다.
- 억지로 무언가를 하도록 다그치지 않는다.
- 결정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려고 조언하지 않는다.
- “왜”냐고 묻지 않도록 한다. 이런 질문은 심리상태를 방어적으로 만든다.

- 그들의 감정을 동정하지 말고, 공감하도록 한다. 쇼크 받은 듯이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거리감을 만든다.
- 비밀 보장을 약속하지 않아야 한다. 가족이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 알려야 한다.
- 대안이 가능할 것이란 희망을 주도록 한다. 단, 그럴듯한 확신은 주지 않아야 한다.
-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자살도구를 치우고 정신과 의사나 자살예방 전문 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6.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자살 위기개입모델)

상담과정은 1단계 탐색 → 2단계 이해 → 3단계 행동으로 구성된다.

1단계 - 탐색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관점에서 상황 파악하기 ○ 내담자와 진지한 대화에 임하기 ○ 자살 생각 여부 확인하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처한 문제를 상의, 현재 심경(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 초기 면접의 신뢰감 형성 ○ 자살의 이슈 식별하기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착하고 편견 없이 내담자를 배려하는 마음 갖기 ○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판단하지 않기 ○ 내담자의 현재 감정에 중점을 두고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 내담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 ○ 내담자(상황)에 대해 감지한 대로 반복해 주어 듣고 있음을 시사하기 ○ 자살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면 자살 생각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기
예제	<p>“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인생에서 지금과 달라졌으면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p>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 지지 ○ 이해

2단계 - 이해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자살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이해하기 ○ 내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 위험도 측정하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살위기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점 찾기 ○ 자살행동의 위험도 측정하기 ○ 위기상황에 처한 내담자의 성향 판단하기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질문과 응답 이용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내담자를 격려하며 대화하기 ○ 구체적인 질문으로 내담자의 자살위험에 관한 정보 알아내기 ○ 내담자 상황에 대해 정확한 상호 이해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담자의 자살위기에 대한 위험 측정을 요약하기
예제	<p>“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힘들지만 딱히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군요.”</p>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토로(누군가에게 자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 균형 잡힌 관점

3단계 - 행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인 위험을 막기 위한 행동대안 계획하기 ○ 세워진 대안에 동의하기 ○ 계약한대로 대안을 이행하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해행동 없이 취할 수 있는 해결책과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탐색하기 ○ 자해 행동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서약에 동의하기 ○ 현재의 긴급 위기상황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을 실행하기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 내담자의 스트레스와 위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기법 사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협조하여 이루어질 것(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위험도 낮을 때) - 지시적일 것(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위험도 높을 때) ○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하기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행계약을 제시하기 ○ 지도력을 보여 주고 현실적인 격려 해주기
예제	<p>“어떻게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p> <p>“아무 때나 찾아와요.” 보다는 “만일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오세요.” 또는 “또 자살충동이 생기면 찾아오세요.”</p>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감 회복 ○ 희망감 ○ 자살예방 행동 착수

7. 수원시자살예방센터 활용하기

가. 전화 상담

- 전화상담교육을 수료한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된다.
- 지역사회 내 가족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 정서적, 정신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기상담을 제공한다.
- 상담원 20명이 주 1회 3시간씩 근무하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2회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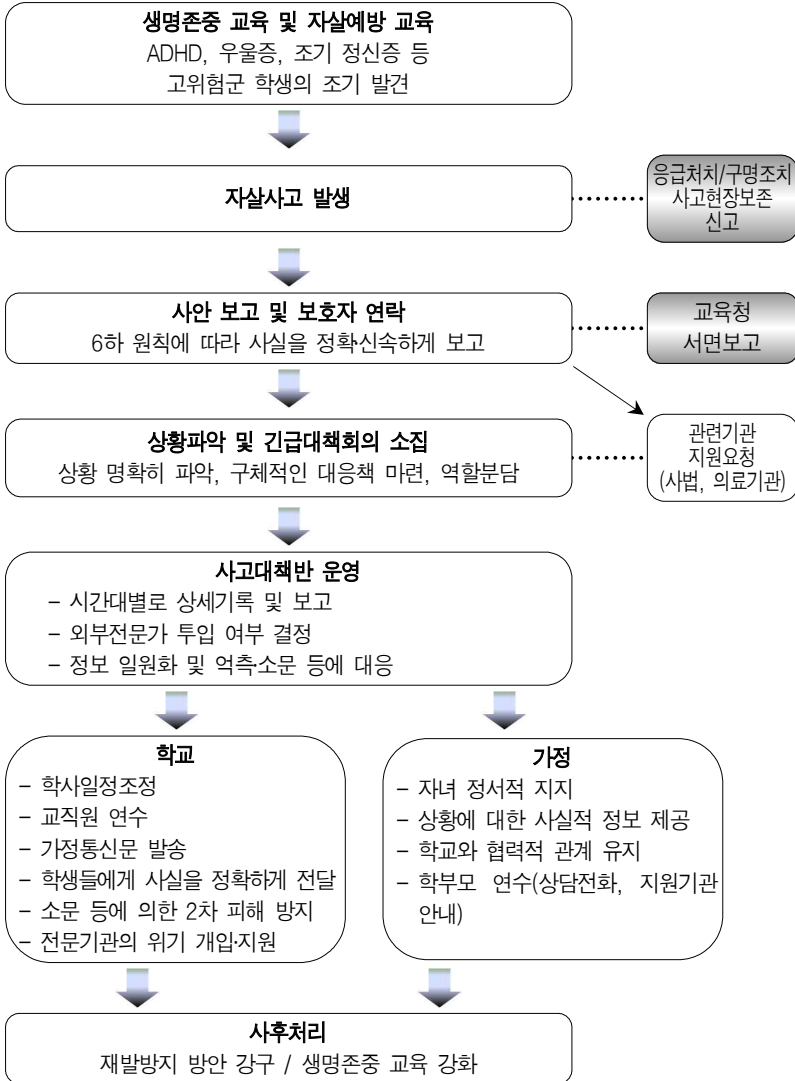
나. 인터넷 상담

-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교육심리상담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목사, 수녀 등 10명의 상담전문가들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다. 방문 상담

- 자살을 시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개별 및 집단상담, 가족치료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 재시도를 예방한다.
-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정신과와 연계하여 전화, 면접상담, 방문,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IV 처리 절차



V 청소년 자살 사후 개입

1. 자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사항

- 시신을 옮기거나 다른 증거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학생들을 접근시키지 않는다.
- 자살을 발견하고 목격한 모든 학생과 직원의 이름을 기록해둔다.
 - 목격자들은 현장에 함께 두고 다른 직원, 학생들과의 접촉을 막는다.
 - 경찰이 올 때까지 목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한다.
 - 사건 후 목격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가능한 빨리 제공한다. 목격자들이 사건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은 자살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차적 외상을 불러일으킨다.
- 형제자매의 존재와 소속 학교 등을 확인한 후, 그들에게 자살 사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알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 학교 대표자를 경찰과 함께 보낼 수 있다.

2. 사후 개입

가. 위기관리팀

자살사망 발생 시 학교장은 즉각적으로 위기관리팀을 구성해야한다.

- 구성 : 학교행정가 및 교사, 지역사회기관 정신건강전문가(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 등
- 역할
 - 가까운 주변 청소년의 자살을 경험한 사람(자살생존자)들의 정서적 안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 활동
 - 자살의 전염성과 모방을 줄이기 위한 노력
 -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 수립
 - 고위험으로 선별된 학생들에게 애도상담과 위기개입 제공을 통하여 친구의 죽음에 대해 정서적, 인지적으로 충분히 극복하고 적절한 대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의 관련기관에 연계하여 충분한 지원서비스 제공
- 경찰과 연락하여 사건 확인

나. 사후 개입 시 유의사항

- 학생들의 반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준비시킨다.
- 직원들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 교사, 학생,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취해질 절차를 명확히 한다.
- 학생들의 등·하교 과정과 출석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확인한다.
- 교사들은 자살의 전염성을 주지하고, 자살한 학생과 친했던 학생 등 위험성이 높은 학생들을 파악하도록 한다.
-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의 행동은 자제하고, 매체와 관련된 질문은 지정된 대변인(학교장 등)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 학생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한다.
- 사전에 계획된 체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린다. 첫 수업시간에 알리는 것이 좋으며 하교 직전에는 사건에 대해 알리지 않는다.
- 학생들에게 과장하거나 가정하지 않고 가능하면 숨김없이, 직접적으로 전달 하며 학교와 다른 기관이 공식적으로 소통했던 정보를 전달한다.
- 언어사용에 주의한다. 자살에 대한 긍정성을 암시하는 단어들(“자살에 성공했다.” 등)은 사용하지 않으며, “자살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등으로 표현 한다.
- 학부모들에게 가능한 빨리 서신을 통해 사건 정보를 제공한다.
- 자살 고위험 학생들을 관찰하고 지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자살이 발생할 만한 학교환경을 적절하게 변경한다.
- 애도상담을 제공한다.

다. 고위험 학생

- 자살한 학생의 형제자매
-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
- 우울, 자살생각, 자해로 인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학생
- 다른 사람의 죽음, 사고, 가족붕괴, 신체적·정신적 또는 성적 학대와 관련된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 다른 학교에 다니는 자살한 학생의 친구 또는 이성 친구
- 자살이 발생하기 전 또는 마지막 순간에 의사소통했던 친구나 주변사람
- 자살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에 대해서 죄책감을 표현하는 학생

라. 자살 발생 후 학생을 돕는 방법

- 심한 불안을 드러내는 학생들은 상담실로 데려가고, 부모님이 데려갈 수 있도록 연락한다.
- 사건 후 이어지는 첫 번째 수업은 유연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그 일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 정상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것을 용인해 준다.
- 며칠 동안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다.
 -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항상 있고, 사람들을 도울 방법도 있다.
 - 자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
 - 문제는 일시적이고, 죽음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
 - 힘들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자살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 자신이나 친구들에 관해 걱정되면 어른들에게 말한다.
- 이런 메시지는 학생들이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살방법, 장소, 과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학생들이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부드럽게 중단시킨다.
-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자살방법에 대해 부정확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 자살생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 자살생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한 학생에 대해 좋게 기억하기를 원할 것이다.
 - 자살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친구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다.

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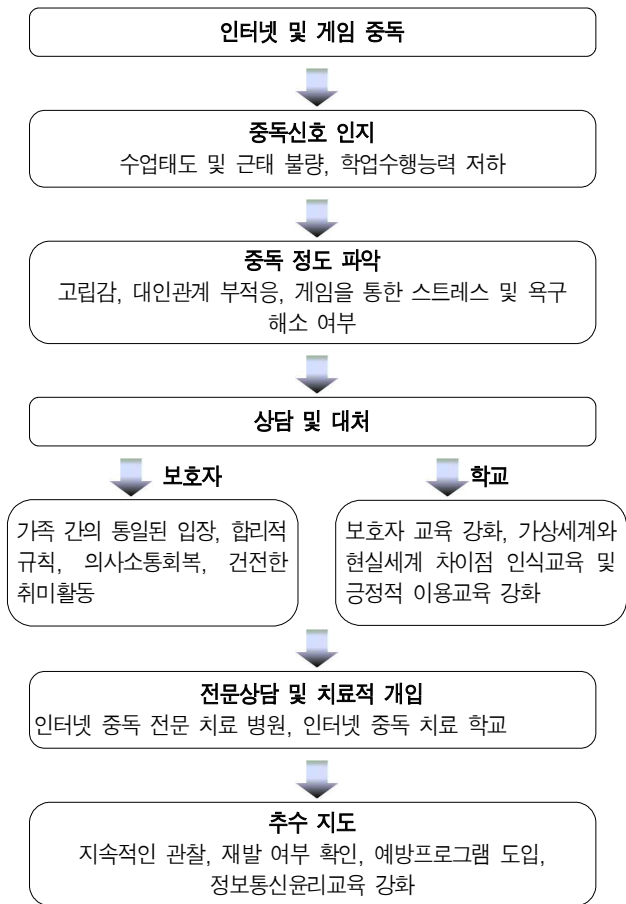
학생 사안별 대처 방법

- | | |
|-------------|--------------------|
| 1. 인터넷 중독 | 11. 절도 |
| 2. 흡연 중독 | 12. ADHD |
| 3. 학교 폭력 | 13. 성폭력 |
| 4. 재물 손괴 | 14. 가출 |
| 5. 사이버 언어폭력 | 15. 가정폭력 |
| 6. 불량서클 |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 7. 지도 불응 | 17. 학교폭력분쟁조정위원회 |
| 8. 근태 | 18. 안전 사고 |
| 9. 용의복장 | 19. 안전공제회 사고 통보 |
| 10. 집단따돌림 | 20. 안전공제회 공제 급여 청구 |



1 인터넷 중독

과도한 인터넷과 게임에 의해 현실에서의 사회, 가정, 일상생활에 실제 어려움이 생겨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



가. 알아야 할 일

- 중독의 증상, 중독 예방법, 적절한 지도 방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모 교육의 장을 충분히 제공
- 학생들의 건전한 취미활동 찾기 안내, 컴퓨터 및 인터넷의 건전한 활용 교육 강화
- 인터넷 게임 중독에 노출된 학생은 육체적으로 영양결핍증, 수면부족, 운동부족, 전자과 장시간 노출, 불면증, 체력저하, 시력저하, 두통, 근육경질, 관절염, 기억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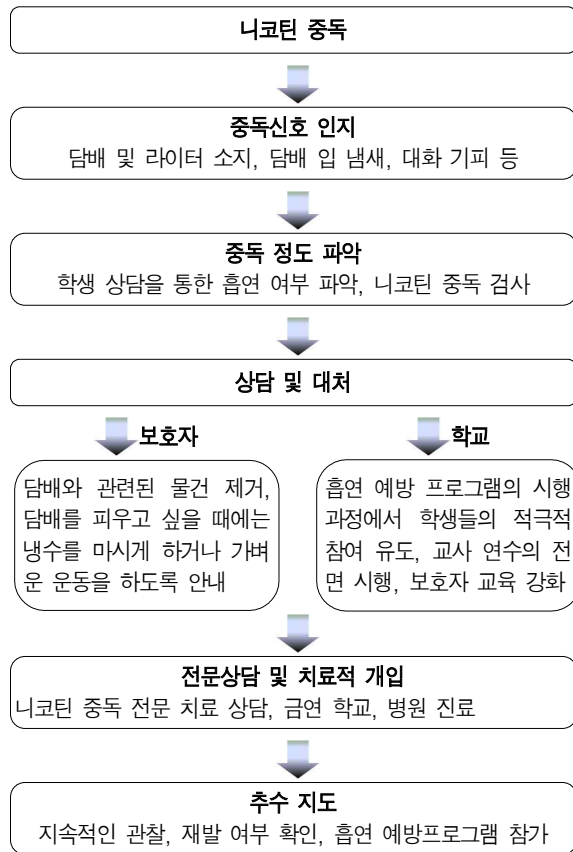
- 감퇴, 안구 건조증, 근시, 거북목 증후군, 목 디스크, 손목 결림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는 이를 신속히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 모색
- 인터넷 게임 중독에 노출된 학생은 정신적으로 편집증, 현실도피, 거짓말, 성격변화, 폐쇄적, 폭력적, 응용 및 창의력상실, 이성애 무관심, 의욕상실, 자각증세, 조급증세, 책임회피 등이 나타남
 -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은 오직 게임에 대한 연구, 게임신문, 게임 잡지 구독 등이 친구들과의 대화 소재이다. 책가방을 열어보면 교과서나 노트대신 게임 관련서적이 가득 들어있으며 수업시간에는 게임공상과 전략을 짜는 생각으로 가득하여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교사는 이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 모색
 - 사안보고서, 학생 상담기록, 교사 의견서, 인터넷 중독치료 의뢰서 등 준비

나. 정보 소개

- 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kyci.or.kr>
-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 <http://www.mediajoongdok.com>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https://www.kado.or.kr>
- 학부모정보감시단 <http://www.cyberparents.or.kr>

2 흡연 중독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니코틴 때문에 자율 신경에 장애가 일어나며, 급성은 메스꺼움·구토·두통·안면 창백·식은땀·허탈, 만성은 동맥 경화·기억 감퇴·소화 불량·수전증·정신 흥분·불면·시각 장애 따위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



가. 알아야 할 일

- 흡연 예방 프로그램 이외에 금연침, 금연초, 니코틴 껌, 니코틴 패치 등을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사용, 니코틴 성분의 패치나 껌, 트로키제(사탕처럼 빨아먹는 상품)의 경우 완전히 금연하지 않고 흡연을 하면 급격한 혈중 니코틴 농도의 상승으로 인해 두통·구토는 물론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불안·혼몽 등의 신경계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요함
- 니코틴 중독의 증상, 중독 예방법, 적절한 지도 방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의 장 제공
- 학생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계기(또래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어른스러워 보이기)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전 교사에게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에 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고, 전 교사가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교육에 참여
- 흡연으로 적발된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와 연락하고, 가정과 함께 금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사안보고서, 학생 상담기록, 교사 의견서, 니코틴 중독치료 의뢰서 등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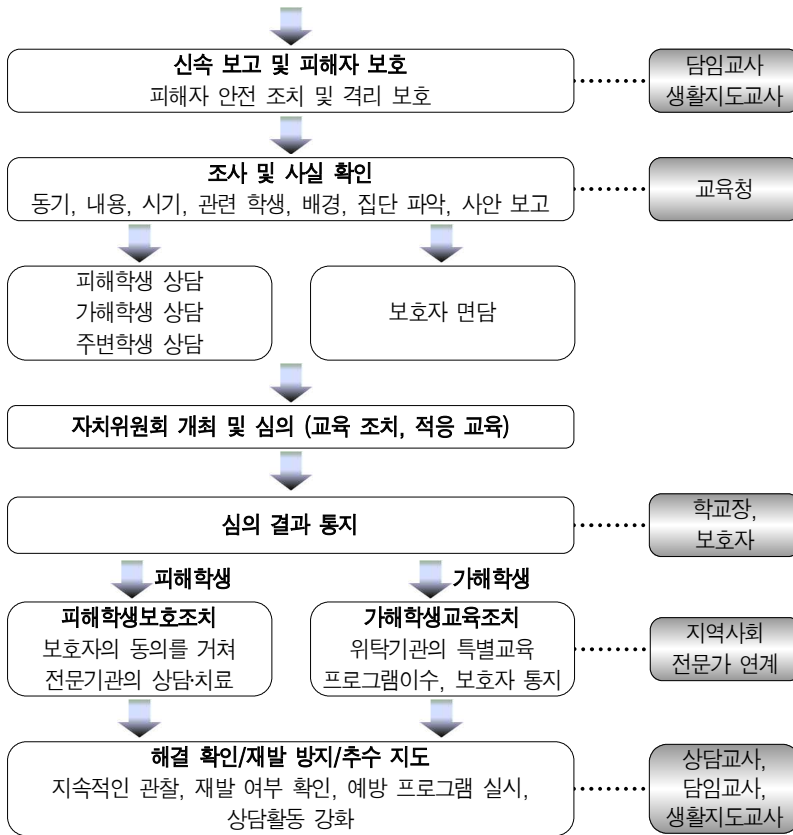
나. 정보 소개

- 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kyci.or.kr>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http://www.kash.or.kr>
- 금연 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or.kr>
- 보건복지가족부 금연캠페인 <http://www.smokefree.co.kr>
-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http://www.ynsa.or.kr>
-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http://www.all4youth.net>

3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사안인지·접수



가. 알아야 할 일

-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 진술서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며, 그 외에는 동의가 필요
-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의 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범인 찾기’의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
- 조사 과정과 조사 결과 처리과정 등에 있어 학생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
- 가정 방문 시 출장 명령을 받고, 2인 이상 동행(여학생의 경우는 여교사와 동행)
-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록
-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퇴학 조치의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가 가능함을 안내
-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석은 출석일수에 산입하고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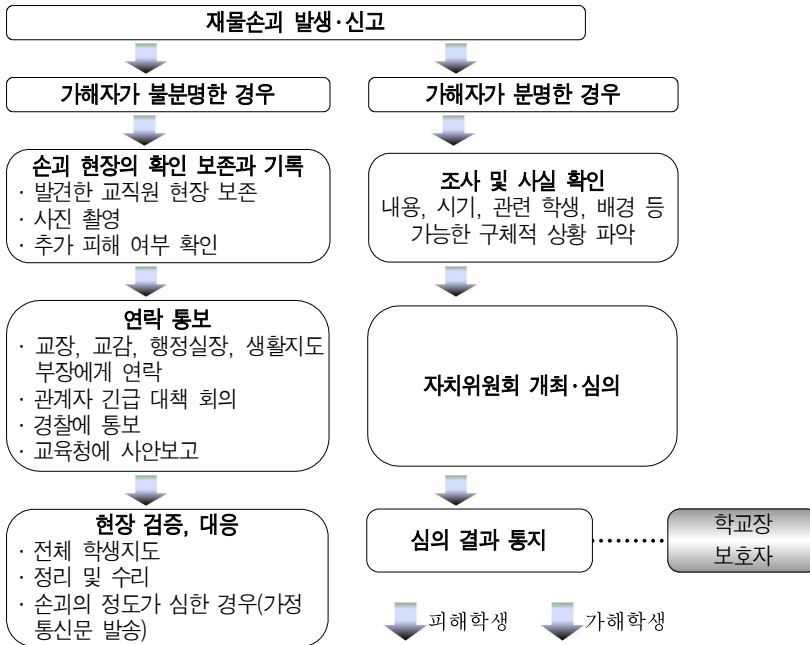
-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아닐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보상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
- 학생 진술서, 이메일 기록, 휴대전화 문자, 반성문, 진단서, 보호자 서약서, 분쟁 조정 신청서/합의서, 학생징계재심 청구서, 학교폭력 관련 서류, 접수 대장(5년), 자치위원회 회의록, 신변보호 희망 학생 신청서 등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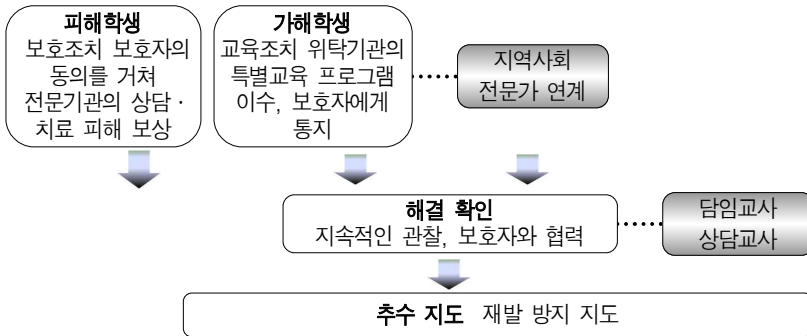
나. 정보소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긴급전화 ☎ 1588-7179
-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31-248-1318
- 학교폭력 SOS지원단 ☎ 1588-9128, 7179

4 재물손괴

재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 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





가. 알아야 할 일

- 가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생활지도교사와 연계 지도
- 가해동기, 배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단따돌림의 피·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기개입 및 예방교육 실시
- 피해학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온화하고 끈기 있게 훈계
- 이런 경우도 재물손괴에 해당
 - 노트필기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
 - 필통이나 체육복에 오물을 묻히는 경우
 - 교과서를 감추어 찾을 수 없게 하는 경우
 - 학용품, 시계, 휴대폰 등을 부순 경우
 - 다른 학생의 자전거에 펑크 내는 경우
 - 다른 학생의 생수통에 침을 뱉는 경우
 - 고의적으로 다른 학생의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서 파손되는 경우
- 학교기물을 파손한 경우, 선도위원회에서 처리
- 반성문, 학생 진술서, 보호자 서약서, 분쟁조정, 신청서/합의서, 신변보호 신청서, 학교폭력예방지도계획, 사안보고서, 교내·외 생활지도일지, 선도대장, 학생상담 기록부,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관련 서류, 신변 보호 요청서, 특별교육 의뢰서 등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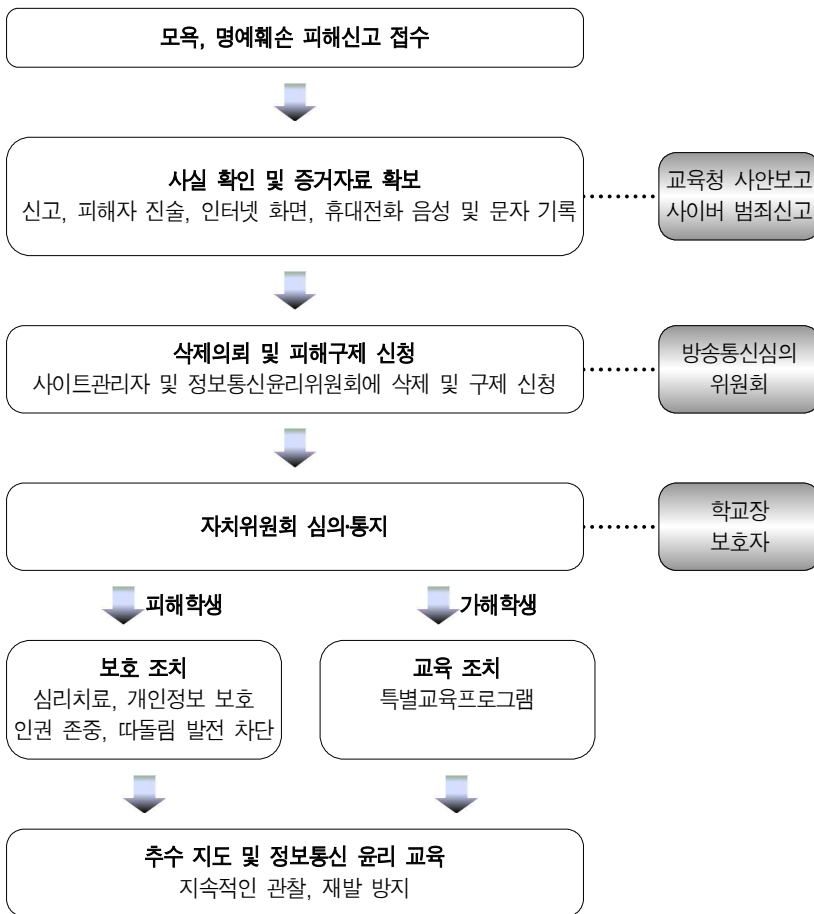
나. 정보소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형법 제366조
- 학교폭력신고센터(사이버경찰청) <http://cyber112.police.go.kr>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긴급전화 ☎ 1588-7179

○ 학교폭력 SOS지원단 ☎ 1588-9128, 7179

5 사이버 언어폭력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에게 욕설, 비방(명예훼손), 도배, 음담패설(성적 욕설), 유언비어 등 모욕을 가하거나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가. 알아야 할 일

- 사이버 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며 형법상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
-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자의 집단따돌림 피해 여부 조사
-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록
- 사이버 범죄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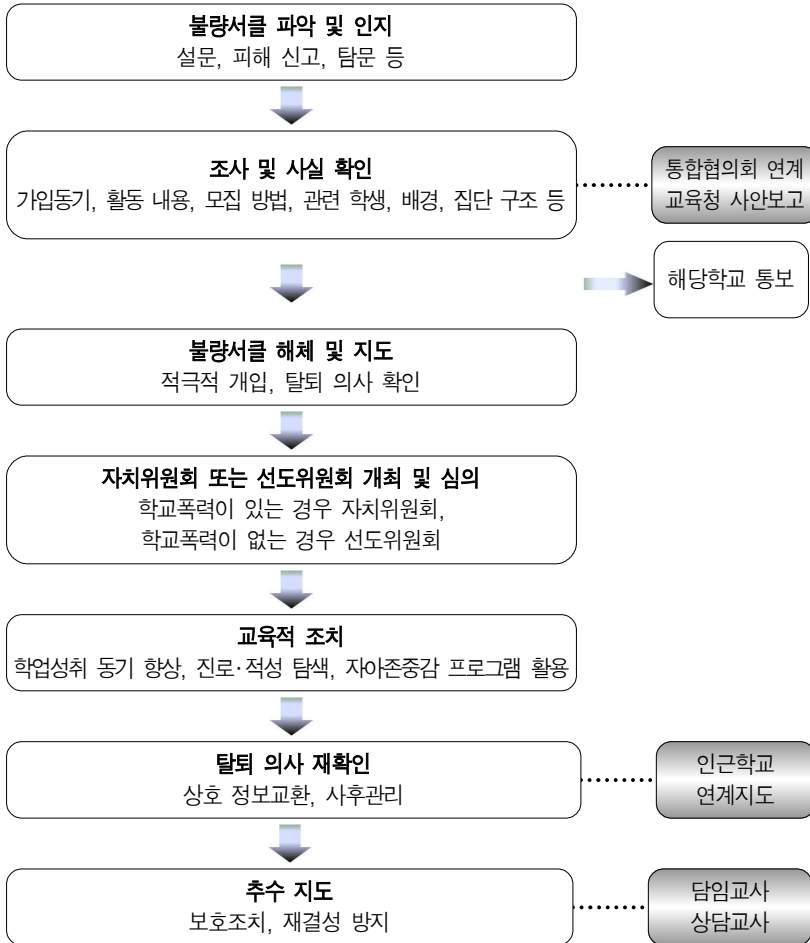
-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처리
- 사이버 언어폭력의 대응 방법
 -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함
 - 가해자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피해구제 요청
 -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해당 글 삭제 요청
 - 해당되는 범죄가 있다면 형사고소 할 수 있음
 -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음
-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자 되지 않기 위한 노력
 - 중성 아이디 사용
 -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원하지 않는 메일 답하지 말고, 필터링 소프트웨어 사용
 - 온라인상에서 대화할 때 상대방을 주의
 - 선별적 프로그램을 사용
- 학생 진술서, 휴대전화 문자 및 인터넷 자료, 반성문, 학부모 서약서, 피해구제 신청서, 정보통신 윤리교육 계획 및 관련 자료, 학생상담 기록부, 교사 의견서, 사안조사서/보고서 등 준비

나. 정보소개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긴급전화 ☎ 1588-7179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63-0112, <http://www.netan.go.kr>
- 학교폭력신고센터(사이버경찰청) ☎ 112, <http://cyber112.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

6 불량서클

크고 작은 비행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의 힘을 과시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집단 또는 학생



가. 알아야 할 일

- 불량서클 가입학생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멘토 활용·지도
- 학교 부적응 요인(기초학력 부족, 가정문제, 교우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와 가정,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 학교 표준화 검사(흥미, 적성, 진로, 인성검사 등) 결과 적극 활용
- 기존 구성원(동일교, 타교, 타 지역 등)들과의 접촉 차단을 위해 취약 시간 등

- 에 배움터지킴이, 지구별 생활지도 통합 협의회, 지구대와 협력하여 순회지도
- 서클의 집단 구조 파악과 단순 가담자부터 점진적으로 접근·지도
- 재가입 및 결성 방지·신고 방법 등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
- 성인 폭력집단과 연계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육청 및 경찰과 밀한 협조
- 반성문, 학생 진술서, 이메일 기록, 휴대전화 문자, 인터넷 커뮤니티, 보호자 서약서, 분쟁조정, 신청서/합의서, 신변보호 신청서, 학교폭력예방지도계획, 사안보고서, 교내·외 생활지도 일지, 선도학생 명단, 학생상담 기록부,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관련 서류, 신변 보호 요청서, 특별교육 의뢰서 등 준비

나. 정보소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긴급전화 ☎ 1588-7179
- 학교폭력신고센터 ☎ 112, <http://cyber112.police.go.kr>
- 학교폭력 SOS지원단 ☎ 1588-9128, 7179

7 지도 불응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 또는 징계 등의 교육조치에 대하여 불이행 하는 행위



가. 알아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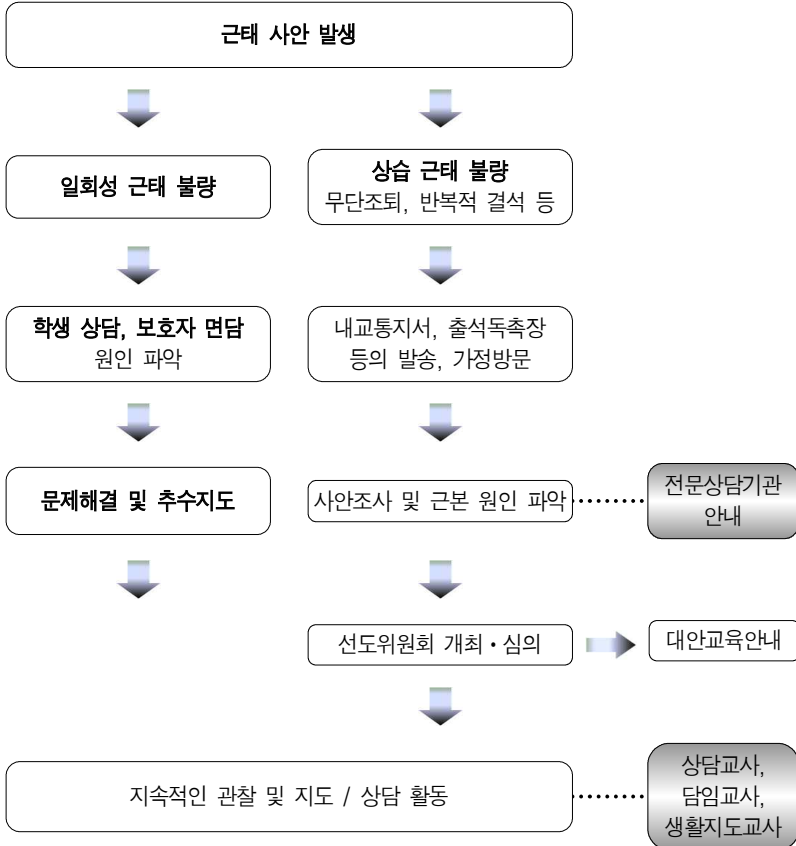
- 교육조치 불이행은 학부모의 뜻에 따라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처리
- 감정이나 여론에 치우친 조치는 지양
- 교권과 학습권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처리
- 자치위원회 교육조치 이행을 위한 절차법이 없으므로 사전에 학부모의 교육조치에 대한 이해 필요
- 학교 내의 봉사 조치 기간을 일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하여 이행함으로써 조치를 용이하게 함
- 계속적으로 지도 불응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지역교육지원청 Wee 센터의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음
-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비행 등으로 지도 불응하는 학생을 지도하기가 어려울 때 학교장이나 보호자는 학교장 통고제도를 통해 소년보호재판(p.122 부록 참조)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 학생 진술서, 반성문, 보호자 서약서, 학생 지도록, 선도위원회·자치위원회 회의록, 교사 의견서 등 준비

나. 정보소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학교생활규정

8 근태

학교의 정해진 일과표에 따르지 않고 늦거나 결석하는 등의 행위



가. 알아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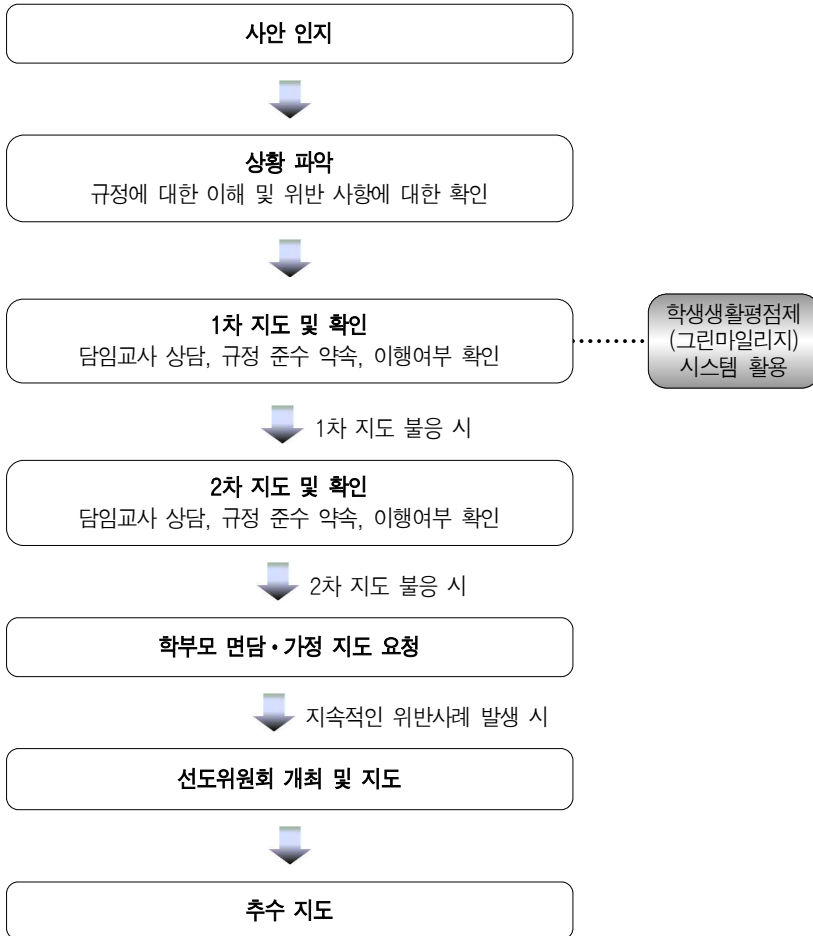
- 무단 외출·결과·조퇴 등은 다른 일탈 행동의 전조임을 인식
- 상습화 되지 않도록 초반에 개입 지도
- 학생들의 근태 사항은 교무부, 생활지도, 진로상담부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정보 공유
- 장기 또는 상습 결석생은 가정방문(출장 처리)을 통해 원인 파악
- 가정 방문 시 가급적 2인 이상 동행하며 여학생의 경우 여교사 동반하고 가정, 학업, 교우 관계 등 원인에 따라 적절한 지도
- 무단결석이 7일 이상 계속 될 경우, 보호자에게 취학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연락두절의 경우 교육청 및 읍·면·동에 통보하여 취학의무를 독려
- 무단결석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계속 결석 처리하지 않고 해당학년의 정원에서 제외해 별도의 학적관리 가능
- 정원 외 학적 관리
 - 대상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3개월 이상 장기결석자
 - 유예 : 의무교육대상자의 해당학년 취학의 의무를 1년(해당학년도 말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류하는 것임(다시 유예, 연장 가능).
 - 정원 외 관리 :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기 결석하여 이후 출석 하여도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임(넓은 의미의 유예에 해당).
- 출석부, 학생상담기록부, 징계 관련철, 담임교사 의견서, 출석독촉장, 내교통지서 등 준비

나. 정보소개

-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②항
- 교육부 훈령 719호/728호 별지 제8호
- 2010교무학사업무매뉴얼(중등)p.25~p.26, 학교별학업성적관리규정
- 대안교육 : 대안교육연대 <http://psae.or.kr>, 민들레 <http://mindle.org>

9 용의복장

파마, 염색, 화장, 교복 미착용 또는 변형 착용 등 학교생활규정에 어긋난 행위



가. 알아야 할 일

- 용의복장 지도는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또는 자치법정제 활용
- 개인의 사적 생활이나 가정환경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지도에 유의
- 생활 규정 제·개정 시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으로 교칙 준수 풍토 조성
- 용의복장 상태 관찰을 통해 학생의 문제점 조기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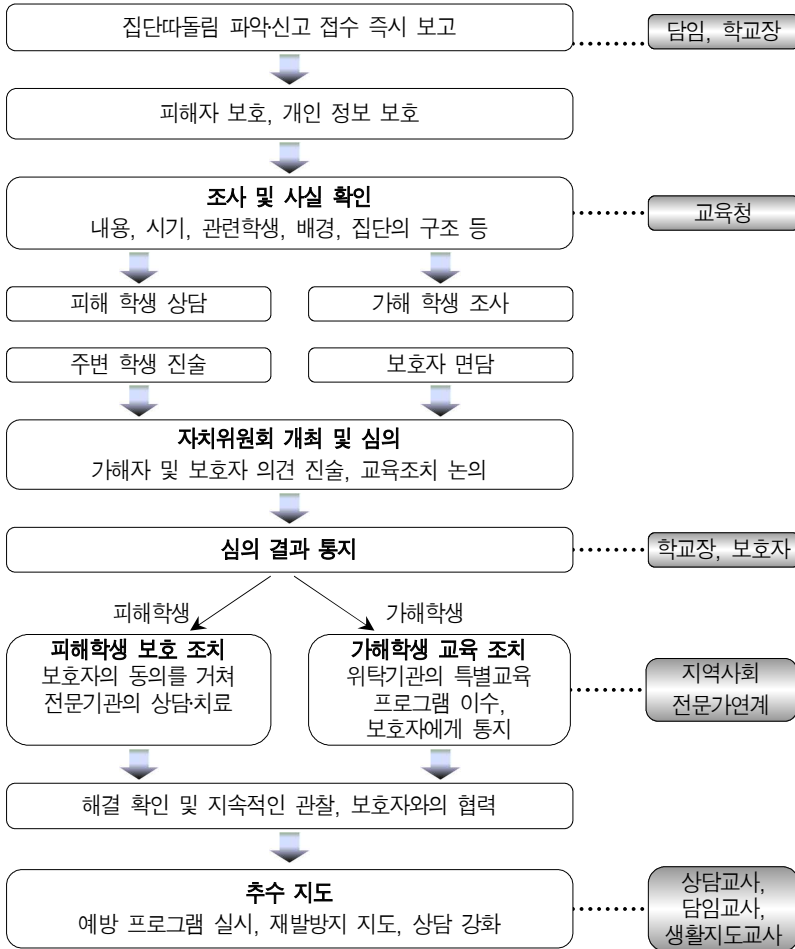
- 반복적 위반은 용의복장 지도뿐만 아니라 지도 불응에 대한 교육 조치 가능
- 규정에 따른 일관된 지도 및 각종 기본예절과 함께 생활 습관 형성 및 인성 교육 강화
-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 실천 중심의 바른 생활 습관 지도
- 학생진술서, 상벌점 카드, 상벌점 누적관리 대장, 선도위원회 회의록, 학교생활규정, 사안조사서/보고서, 예외학생(신체적, 연례활동 등) 명단철, 개별학생 상담록, 학생상담일지 등 준비

나. 정보소개

- 교육기본법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8조
- 학교생활규정
- 2010교무학사업무매뉴얼(중등) p.75, pp.80~81
-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http://www.hi1318.or.kr>

10 집단따돌림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여럿이 함께 또는 개인이 돌아가며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가. 알아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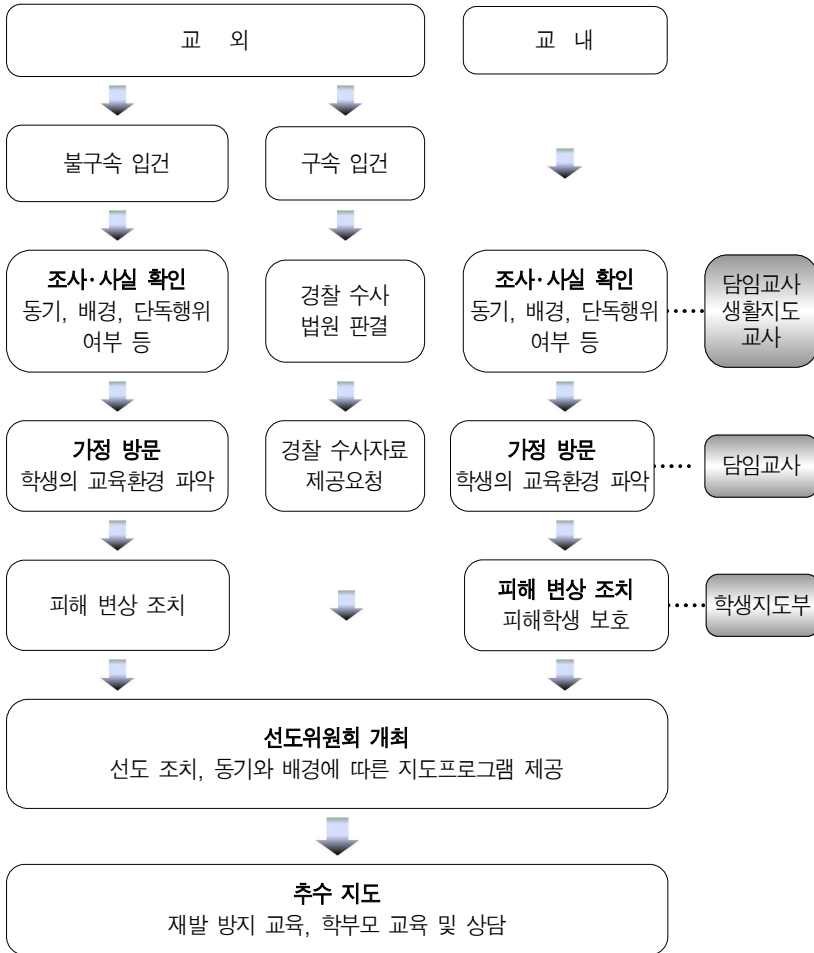
- 집단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처리
-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가해와 피해 상황만을 냉정하게 체크하고, 초기 단계부터 지도하거나 대화한 내용 수집
- 피해학생에 대한 지도는 지속적으로 한 후 그 내용 기록
- 피해학생 입장에서 지도 및 지원(“너에게도 반성할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설교적 지도를 하게 되면, 교사와의 대화를 피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치료 및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안내
-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 학생을 배치하여 등하굣길이나 학급 내 생활에 도움 주기
- 피해학생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처벌 지향적 조사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 두기
- 가해학생은 ‘가해자’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자’일 수 있음을 인식
- 학생 진술서, 반성문, 특별교육 확인서, 보호자 서약서, 분쟁 조정신청서 및 합의서, 학교폭력예방지도 계획, 학생상담 일지, 사안 보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특별교육 의뢰서 등 준비

나. 정보 소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 학교폭력 SOS지원단 ☎ 1588-9128, <http://www.jikim.net>
- 학교폭력신고센터(사이버경찰청) <http://cyber112.police.go.kr>
- 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 '사랑이 함께하는 학교' p.41-p.48 참고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긴급상담전화 ☎ 1588-7179(친한 친구)
-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31-248-1318 , <http://www.hi1318.or.kr>

11 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그 사람이 모르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



가. 알아야 할 일

- 학교는 교육의 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범인 찾기’의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해결과정 모색
- 조사과정과 결과 처리 등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가정방문은 출장 명령을 받아 2인 이상 동행
- 주운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절도에 해당됨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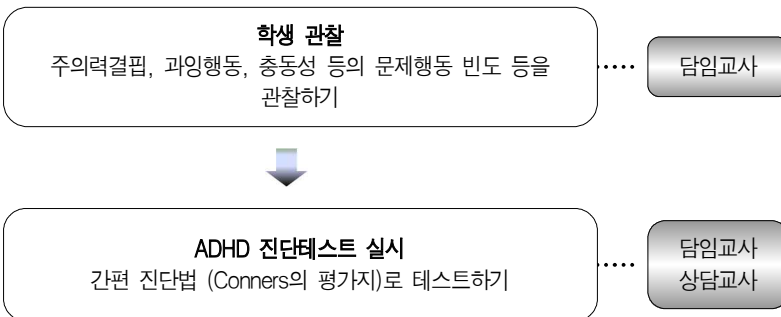
- 만 14세 미만의 학생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며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 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으로 진행됨을 알림
- 7년 경과 후에 법원에 삭제 요청을 하면 기록이 소멸되기는 하지만, 벌금형 이상만 되어도 전과 기록이 남음을 지도
- 고가의 물건이나 돈 등을 가급적이면 학교에 휴대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훈화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도
- 체육 시간이나 특별교실 수업으로 교실을 비울 경우, 교실 문단속 철저 및 개인 사물함에 자물통을 설치하여 잠글 수 있도록 지도
- 반성문, 학생 진술서, 보호자 서약서, 정보 수집을 위한 설문지, 사안 조사서, 학생지도 카드, 교내외 생활지도 일지, 선도학생 명단, 학생상담 기록부, 출석부 등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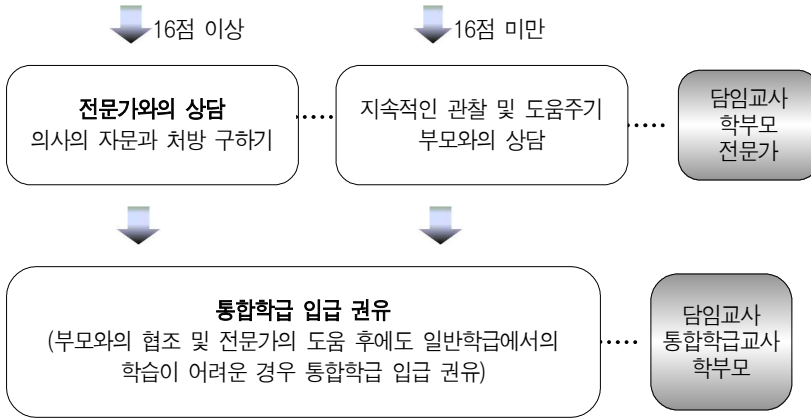
나. 정보 소개

-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엔 ‘측법 소년’이라고 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 처분은 받지 않으나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 학생고충신고 상담전화(Wee 센터) ☎ 1588-7179(친한친구)
-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31-248-1318, <http://www.hi1318.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http://www.klac.or.kr>

12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정신과적 장애로서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며,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





가. 알아야 할 일

- ADHD 진단체크리스트, 학생 행동 관찰기록지 등을 활용하여 가급적 빨리 진단
- ADHD는 정신장애도 아니고 단순히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생활 태도의 문제가 아닌 ‘질병’임을 인식
- 학부모는 자녀가 ADHD라는 판정을 받아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하면서 학습방법이나 생활태도의 개선에 대해 교사와 부모가 함께 노력하는 것임
- “정신만 차리면 집중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없어진다, 양육을 잘못해서 그렇다.” 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 갖지 않기
- ADHD 학생의 문제행동은 아무리 지적하고 혼내도 교정되지 않음을 인식
- ADHD 학생의 문제행동은 학생이 게으르거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기능(특히 전두엽)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임을 알고, 긍정적인 작은 변화라도 보일 때 적극적인 칭찬으로 보상
- 지시할 때는 구체적 지시어를 사용 (‘-하지 마라.’ 보다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식의 표현)
- 짧게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는 과제 부여 및 일관성 있는 보상
- 부모와 교사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정노트’ 사용
- 식욕 부진과 불면증의 부작용이 있으나, 신경 자극제가 주어졌을 때 ADHD 학생의 70%이상이 현저한 호전을 보이므로 적절한 처방으로 치료받을 수 있음을 부모에게 알림

나. 정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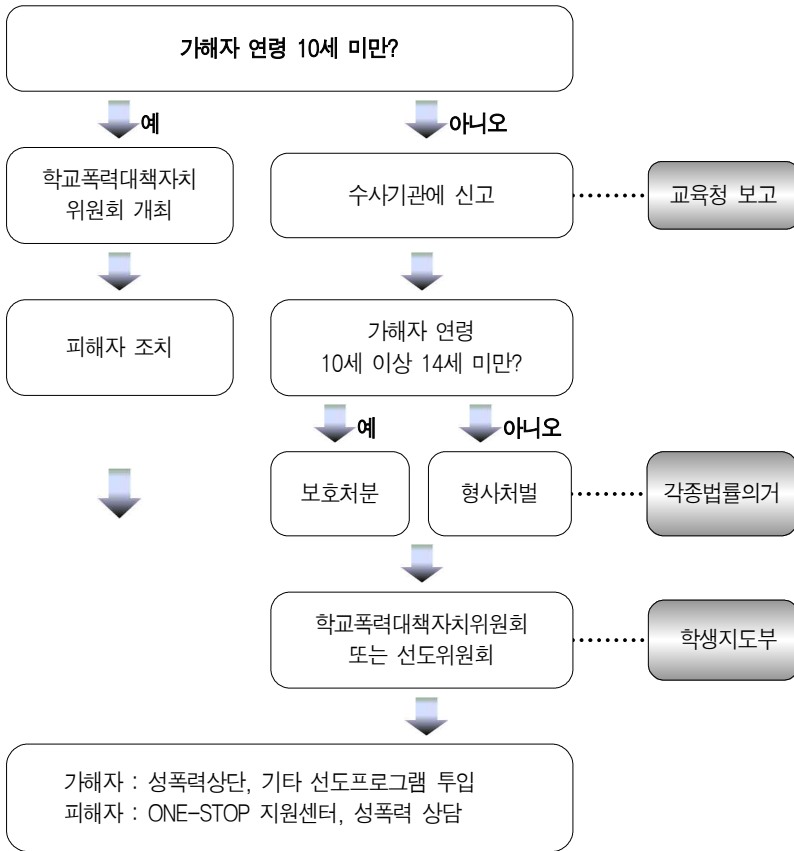
- 손오공의 특수교육 <http://speedu.cafe24.com>
- 심리검사 치료기관 테스피아 <http://www.tespia.com>
- 특수교육지원센터 <http://support.knise.kr>

13 성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과 관련된 모든 행위

성폭력 발생





가. 알아야 할 일

- 만 10세 미만의 소년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적용
-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3가지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소 시효 정지 가능
- 성폭행 피해자의 생존권리 보장 - 피해자의 신원과 비밀누설 금지, 전담조사제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2, 3차적 피해 없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 가능
- 피해학생의 정신적 치료에 주의하여 차후 심리적 불안 및 대인 기피 등 사회성에 문제를 갖지 않도록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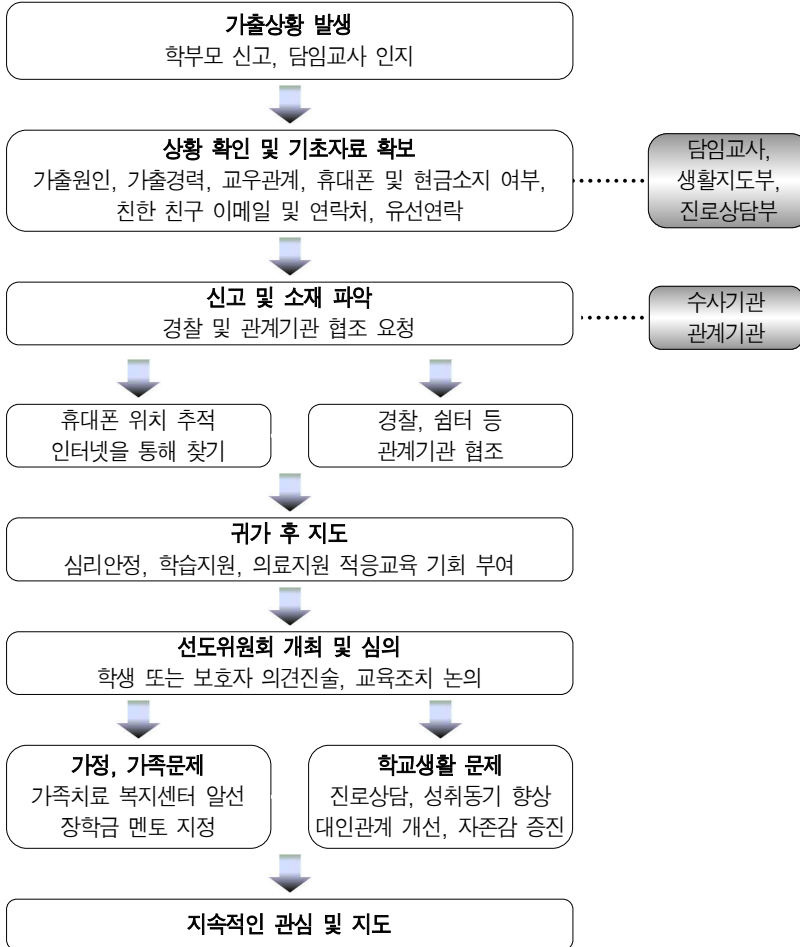
- 자살이나 자해, 강박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 형사판결과 별도로 가해행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 교사도 피해자와 감정이입이 되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의

나. 정보소개

- 형법 제297 ~ 298조, 제302조, 제303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항(성희롱 처벌법규)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17학교여성폭력피해자긴급지원센터 ☎ 117, <http://www.117.go.kr>
- One-stop지원센터 : 경기지역(아주대병원, 의정부의료원)
24시간 의료, 상담, 수사, 법률 무료지원 ☎ 112, ☎ 117 연계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
- 해바라기아동센터 ☎ 031-708-1375 <http://www.sunflower1375.or.kr>
- 여성긴급전화 ☎ 1366, <http://www.ky1366.or.kr>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2, <http://www.sisters.or.kr>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http://www.svpcc.net>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14 가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귀가하지 않는 경우



가. 알아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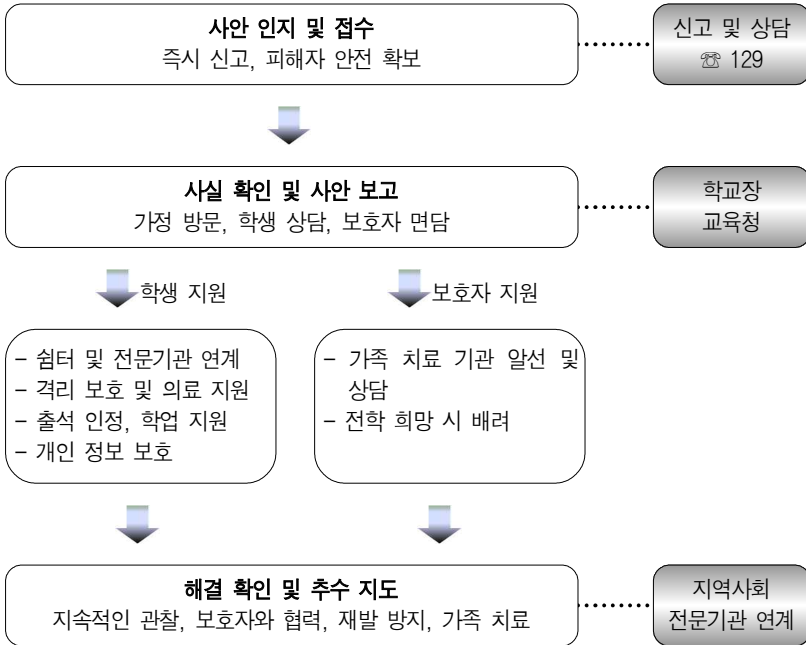
- 가출을 책망하기보다 평소 학생들의 또래집단에 관심을 갖는 등 학생의 내면을 이해하는데 중점
- 가출은 다른 일탈행위로 전이되기 쉬우므로 초기에 개입하여 적극 지도
- 학생 인권 존중 및 개인 정보 보호
- 가출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에 따른 전문 기관의 협조 요청 및 안내
- 경찰 신고(182)나 관계기관에 소재 파악 의뢰 등은 보호자와 협의한 후 조치
- 가정폭력(아동학대)인 경우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가출 후 등교 시 적응 교육 기간 부여 후 입실 여부 결정
- 가출이 장기화될 때 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3250-111)로 신고

나. 정보 소개

- 강남구 청소년 쉼터 <http://www.ts7942.or.kr>
-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 031-758-1213
- 수원시 청소년 쉼터 ☎ 031-232-4866
- 안산 청소년 쉼터 ☎ 031-414-2565
- 안양시 청소년 쉼터 ☎ 031-381-8111, <http://www.yea21.net>
- 열린 청소년 쉼터 ☎ 031-918-1366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http://www.jikimi.or.kr>

15 가정폭력

보호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방임, 그 밖의 학생의 건강·복지를 해치는 행위



가. 알아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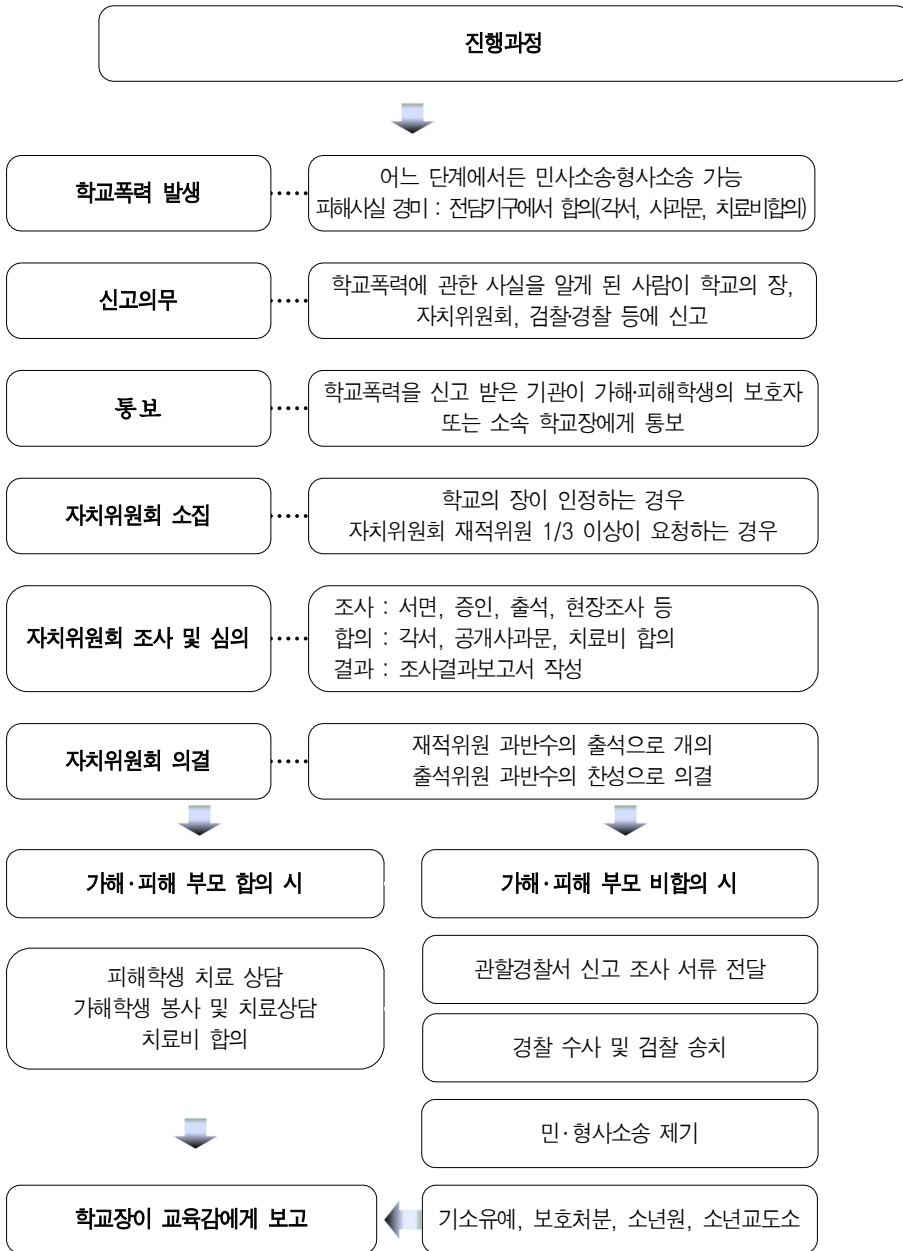
-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 가정폭력을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 준수
- 재발 방지를 위한 가족치료 및 가족상담 권장
- 보호자가 가정방문 또는 면담을 거부할 때에는 아동상담소에 「출입조사」요청 가능
- 학업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전학 희망 시 배려, 전입학생의 경우 전 학교와 정보 공유
-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진술서, 진단서, 출석인정 확인서, 학부모 서약서, 학생상담 기록부, 상담 기초자료, 교사 의견서, 사안 조사서/보고서, 신변 보호 요청서, 복명서 등 준비

나. 정보 소개

- 누리존 청소년폭력예방센터 <http://cafe.daum.net/nurizonegikimi>
- 들꽃청소년세상 <http://www.wahaha.or.kr>
- 보건복지콜센터 ☎ 129 <http://www.129.go.kr>
- 신나는 집 ☎ 031-494-7636
- 은행골 우리집 ☎ 031-756-7942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1577-1391, www.korea1391.org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http://www.lawhome.or.kr>
- 한국청소년 상담원 ☎ 1588-0924
- 헬프콜 청소년 전화 ☎ 1388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http://www.jikimi.or.kr>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활동을 전개하며,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이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1차적으로 개입하여 가·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등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기구



가. 알아야 할 일

- 모든 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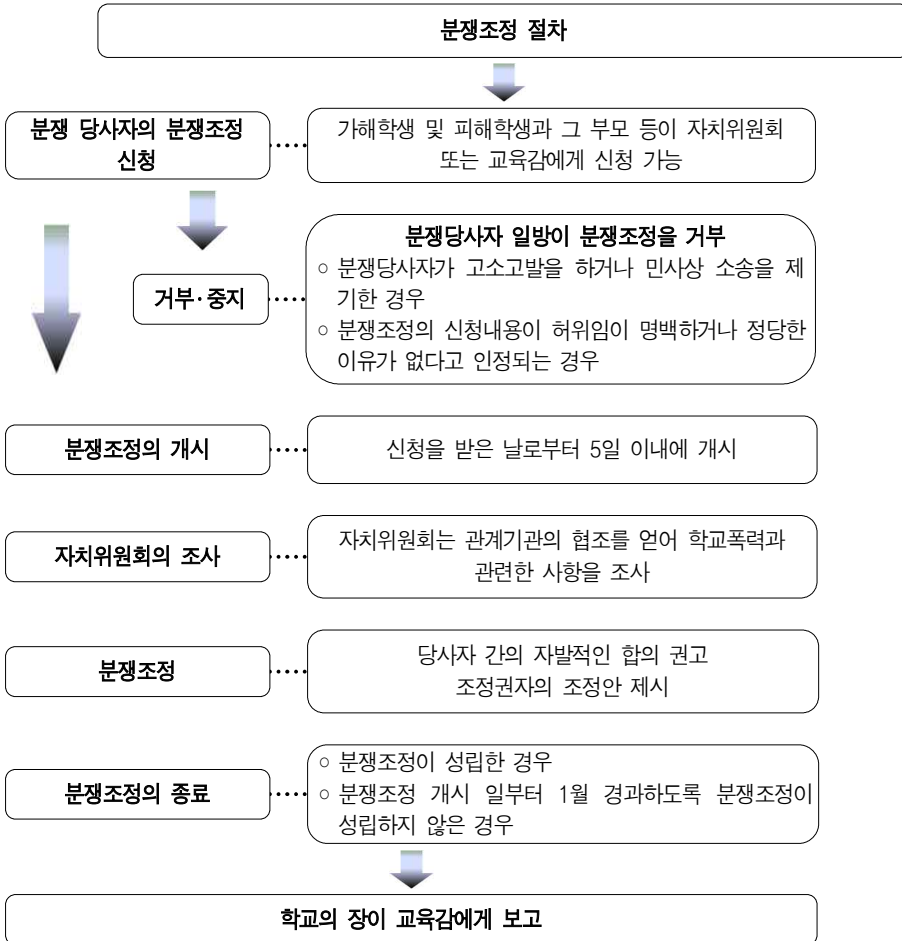
- 학교의 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이 될 수 없음
- 폭력관련 사안은 반드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야 하며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위법
- 가·피해 학부모에게 자치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더 이상 중재하지 못하며 학부모 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주지
- 가·피해학생의 신상 및 사안의 내용과 자치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 및 회의록은 비밀누설 금지 및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벌금과 함께 피해 입은 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 학생이 아닌 자가 가·피해자로 관련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처리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가·피해학생에 대해서만 각각 해당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 사망사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 사법기관에 구속된 사건,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 때,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보편적이지 않고 특이한 사안 발생시

나. 정보소개

- 상담 및 예방 교육기관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1588-9128, <http://www.jikim.net>
 -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31-248-1318, <http://www.hi1318.or.kr>
- 피해학생 지원기관 및 가해학생 교육기관
 - 우리아이 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 ☎ 02-582-8118, <http://www.uri-i.or.kr>
 - 학교여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 031-216-1117(수원), ☎ 031-874-3117(의정부) <http://www.117.go.kr>
 - 대안교육종합센터 ☎ 02-871-2733, <http://www.daeancenter.or.kr>
- 법률지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02-532-0132, <http://www.klac.or.kr>

17 학교폭력분쟁조정위원회

분쟁 당사자(가·피해측)가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



가. 알아야 할 일

- 분쟁조정 기한은 학교폭력 발생 후, 분쟁 당사자가 조정 신청할 시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고 분쟁조정 기간은 1개월
- 가해·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일 경우는 자치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소속 학교가 다를 경우 중 동일한 시·도 관할일 경우 시·도 교육감이 분쟁조정을 하고 관할이 다른 시·도일 경우 각 지역 교육감 간에 협의를 거쳐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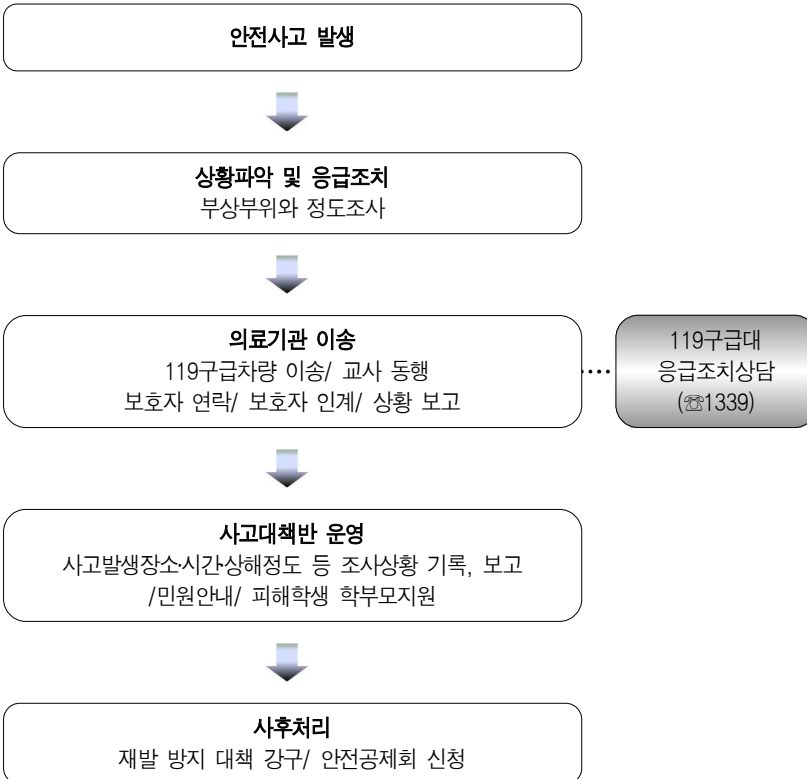
- 분쟁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 유도 후 실패 시에는 조정권자가 조정안을 제시
- 분쟁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조정위원회에서 강제 집행할 수 없고 이때는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강제집행 요구
-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선도, 징계조치는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 조치를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로 유보하고 일시적 조치 실시
- 분쟁조정 신청서, 참석요청서, 회의록, 결과 통보서, 합의서 등 준비

나. 정보소개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과학기술부)
- 지원기관 : 학교폭력SOS지원단 ☎ 1588-9128, ☎ 02-585-0098

18 안전사고

수업·수련활동·수학여행·체험활동·봉사활동 등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교내외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입은 신체적 상해나 사고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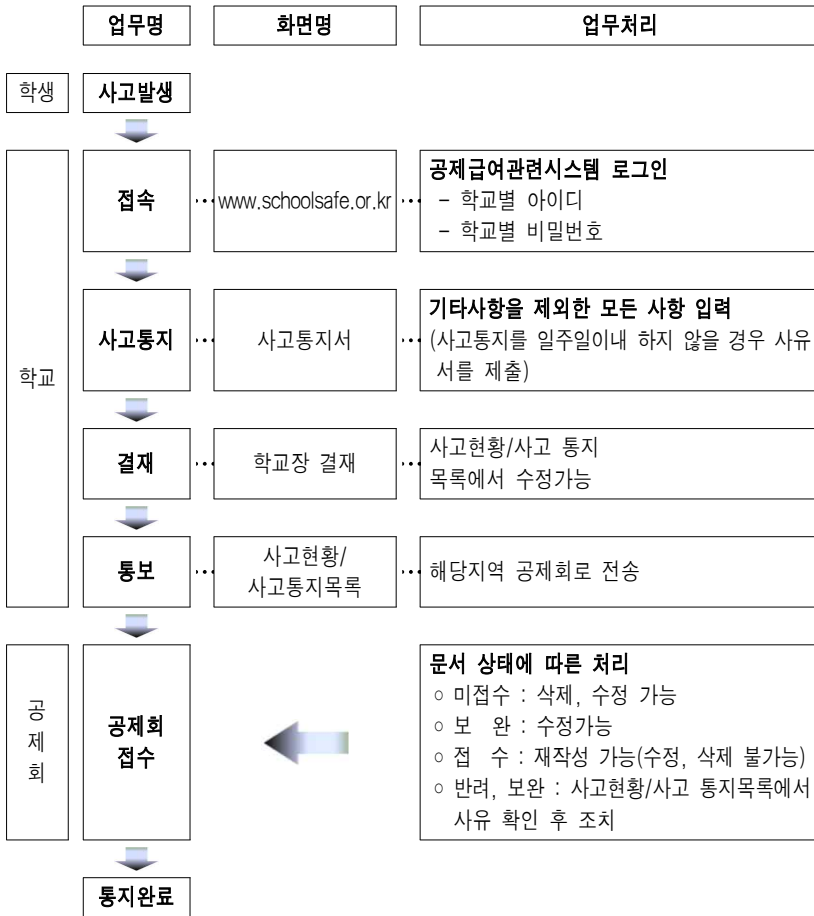


가. 응급환자 이송 및 업무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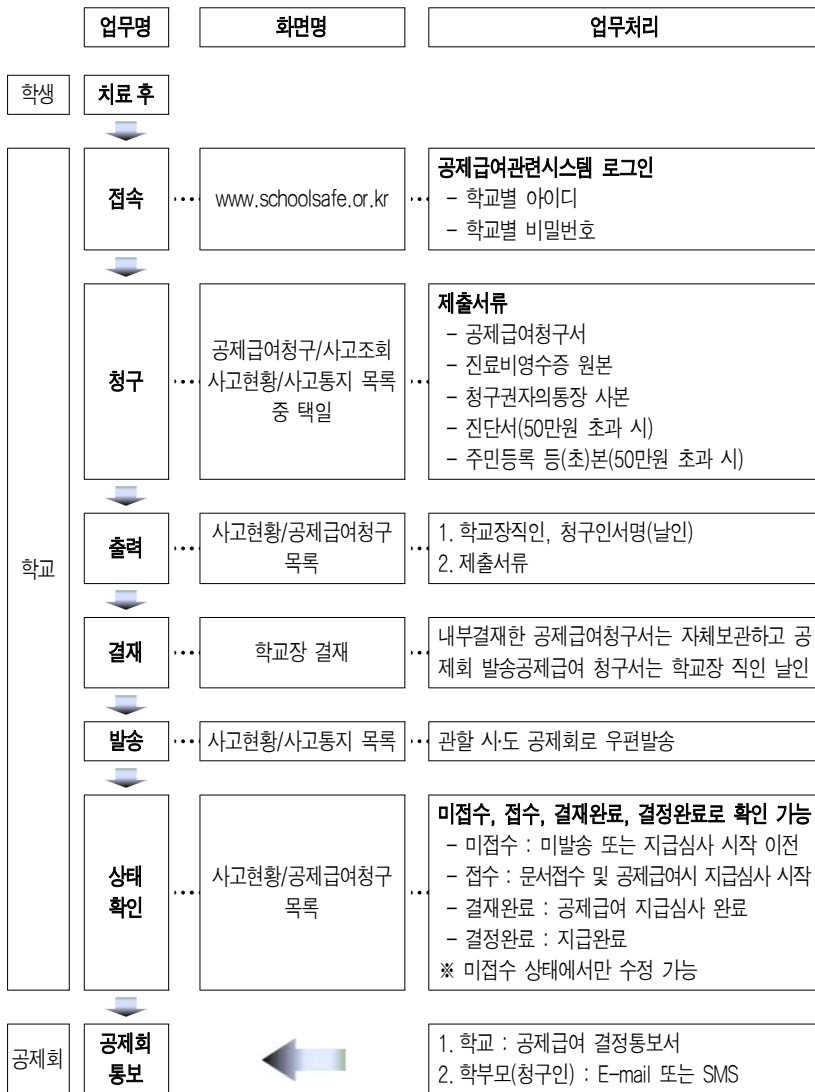
업무분담 환자분류	응급환자 이송 시 업무분담
<p>환자 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 등으로 긴급 이송 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중 누구든지 응급환자와 가까이 있는 자가 신속히 보건교사에게 연락하고, 필요 시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 교사가 응급처치를 하며 1339, 119등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신속하게 연락하고 구급차량 및 요원을 기다려야 할 경우 다음 요령에 의함 1) 의식이 없고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심장 정지 시 심폐소생술을 함께 실시 2) 심한 출혈 시는 압박하여 지혈을 하고 환자의 피부색, 맥박, 호흡수, 동공 크기 등을 파악하여 환자 상태를 상세하게 체크하고 의료요원이 올 때까지 유지하며 보고 3) 환자를 편안하게 하며 환자 운반 시 척추 및 경추 손상으로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금물 ○ 보건교사 : 응급처치 후 이송 시 반드시 동승하고 차량 내에서의 응급처치를 요원과 함께 돕고 지지하며 병원에서의 조치에 협조 ○ 담임교사 :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환자상태, 이송병원, 건강보험증 지참안내 및 이송 시 반드시 동승 ○ 생활지도부장 : 주위 다른 학생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지도와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함 ○ 교감 :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여 보고하며, 필요 시 해당 해당부장 또는 생활지도교사를 병원에 합류시킴 ○ 학교장 :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총괄하며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에 주력
<p>환자 상태가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 :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교감에게 보고 ○ 담임교사 :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 ○ 이송자는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지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상태가 경미한 경우 가급적 일차적으로 담임교사가 이송함을 권장하며, 담임교사가 수업 중이거나 부재 시는 보건교사가 이송 - 경미하다고 보이나 병원에 꼭 가기를 원할 경우 보호자와 함께 가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보건교사가 함께 동행 할 수 있음 ○ 상황을 보건일지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p>이송자에 대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송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출장 처리 ○ 학교 교직원 차량으로 이송 시 이송도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사람은 차량운전을 하지 않음
<p>응급의료 전문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구급 대 신속 구급처리 반 ○ (031) 1339 의료정보센터 : 전문 의료기관, 전문의, 정보통신망 구축 기관

19 안전공제회 사고 통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고 보상하기 위한 절차



20 안전공제회 공제 급여 청구



가. 알아야 할 일

- 소송 및 각종 조사에 대비하여 사고발생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증인 및 기록 확보(사고현장 사진,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 등)
- 공제급여의 내용
 -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필요한 소요 실비
 - 장해 발생 시 장해급여
 -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
- 학교에서는 사고 통지를 할 때, 사고 발생 이후 지체 없이 통지

※ 사고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교육감이 부과징수

-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사고를 통지한 이후 3년 이내에 공제급여 청구를 하여야 하며,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참고 : 학교안전공제 업무편람

http://www.schoolsafe.or.kr/sos/manual/manual_school.hwp

나. 정보소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0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1호]

4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1. 학생인권선언문
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1 학생인권선언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특정한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이러한 권리와 지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며, 학생의 인권도 역시 이 안에 속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려야 하는 동시에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도 살아야 한다.

이에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학생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 학생은 인격체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차별 받지 않으며, 신체적, 정신적 폭력 및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개성을 실현하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받고, 양심·종교의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복지와 교육환경 및 여가 생활과 문화·예술활동, 급식, 건강 등 복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징계 절차와 소수자의 권리보장 등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 상담·조사 등을 청구하는 등 보호·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교사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 학생은 학습자로서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 학교,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제29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회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회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회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 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 ④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

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0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중

결된 경우

-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사무기구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기구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정권고 등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5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제39조에 따른 상임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6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부록

각종 양식 · 학교장 통고제도

- 학생 사안 보고서(일반 사안)
- 학생 사안 보고서(언론 보도 주요 사안)
- 학교폭력 진술서
- 학부모 진술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서(교육청)
- 학교장 통고제도 안내(수원지방법원)



학생사안 보고서 양식 (예시)

학생 사안 보고서 (예시1:일반 사안)

(한국고등)학교/교육청 작성자 : 직(학생부장) 성명 : 홍 ○ ○ (서명)
 보고서 : 직(교장) 성명 : 김 ○ ○ [직인]

발생일시	2010. 3. 10 (수) 19시30분경	보고 일시	2010. 3. 11 (목) 16시 30분경					
사 안 명	학생 집단 폭력	학교 전화	031-243-1234					
발생장소	경기도 ○○시 ○○동 123번지 중앙공원 화장실 뒤							
관련자	가해자 및 당사자	학 교	학년 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한국고	1-3	김○○	여	94. 5. 8	010-2222-1234	○○시○○동 111번지
	한국고	1-3	이○○	여	94. 6. 1	010-4444-1234	○○시○○동 333번지	
	피해자	대한고	1-6	박○○	남	94. 9. 1	010-5555-1234	○○시○○동 444번지
	한국고	1-3	정○○	여	94. 8. 1	010-3333-1234	○○시○○동 222번지	
사안 내용 및 경위								
조치 사항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및 학부모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3.13) 개최 예정 3.12전교생 특별 집단상담 침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계획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3.3(수) 15:20경 : 1-3 김○○(여)는 같은 반 정○○(여) 학생이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1-6 최○○(남)과 사귀다는 말을 한 것을 이○○(여)를 통해 들었음 '10.3.10(수) 18:30경 : 중앙공원에서 1-3 김○○(여)는 할 말이 있다며 정○○(여)를 문자로 불러내 이○○, 최○○와 함께 사실을 확인하려고 함 '10.3.10(수) 19:00경 : 정○○(여)이 나오자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 사실 여부와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정○○(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함 '10.3.10(수) 19:30경 : 피해자 정○○이 거짓말을 한다며 같이 있던 이○○최○○와 함께 3 명이 손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방치함 2010.3.10(수) 19:40경 : 지나던 주민이 쓰러진 정○○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연락하였고, ○○병원으로 후송함 '10.3.10(수) 20:10경 : 담임교사가 사실을 알고 학부모에 연락, 교감선생님께 보고하고 병원으로 가서 피해자를 면담 한 후 사실을 인지 '10.3.10(수) 20:40경 : 김○○, 이○○ 최○○로부터 가해 사실을 확인함 '10.3.10(수) 20:50경 : 경기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에게 전언 보고 '10.3.11(수) 08:30경 : 가해학생을 조사하고 진술을 확보 후, 전문상담교사에 의뢰 심리 검사 및 상담 조치 '10.3.11(수) 16:30 현재 : 피해 학생은 쓰러지며 왼팔 골절과 타박상으로 전치 5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피해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하였음 '10.3.13(수) 10:0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이며 , 전교생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집단 상담, 특별 순화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추진 중임 						
참고사항	직	성명	사안발생당일 근무상황					
	교장	김○○	퇴근					
	교감	문○○	학교에서 자율학습 학생지도 총괄					
	담임	안○○	학교에서 담임 학급 자율학습 학생 지도 실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에서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조사 중이며, 사법처리 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재차 심의 예정 							

학생사안 보고서 양식 (예시)

학생 사안 보고서 (예시2 : 언론보도 주요사안)

작성자 : 직(학생부장) 성명 : 홍 ○ ○ (서명)
 (한국고등)학교/교육청 보고자 : 직(교장) 성명 : 김 ○ ○ [직인]

- 언론사명 : ○○일보, ○○신문, ○○, 인터넷○○일보 등
- 보도제목 : ‘○○○으로 학교에서 교사들 위협 소동’
- 보도일자 : 2010.00.00(목)
- 보도내용 : 동급생에게 자신의 아들이 맞은 것에 격분한 학부모가 학교 교무실을 찾아와 ○○○으로 ○○을 위협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학 교 명 : ○○ ○○중학교
교장 ○○○(031-000-0000), 교감 ○○○(000-0000)

□ 보도 경위

- 피해자 ○○○부가 ○○○을 발사하며 위협한 사실에 대한 학교의 사과 권유에 불만을 품고 2010.00.00 ○○일보 기자에게 제보

□ 사건 개요

- 사안일시 : 2010. 00. 00(토) 13:00경
- 관 련 자 : 가해자 : ○○○(남, 0-00) / 피해자 : ○○○(남, 0-00) / 학부모 : ○○○ (○○○의 부)
- 피해정도
- 가해자와 피해자가 싸움을 하여 피해자 눈 밑에 멍이 들고 부어오름(전치 3주 진단)

□ 사건 경위

- '00.00.00(토) 12:00경 방과 후 교내 계단에서 가해자 ○○○이 피해자 ○○○을 보고 왜 노려보냐며 욕설을 하고 가슴을 한대 때림
- '00.00.00(토) 13:00경 귀가하던 중 ○○○ 사거리 ○○○놀이터 앞에서 싸움을 하였는데 가해자에게 맞아○○○의 눈 주위가 멍들고 부어오름
- '00.00.00(토) 13:45경 피해자 ○○○의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분에 못 이겨 교무실에서 허공을 향해 ○○○을 발사함
- '00.00.00(토) 14:10경 가,피해자 담임교사, 학생부장, 학년부장 등 5명이 학무모를 만나 ○○○지구대로 갔으며 추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함

- '00.00.00(수)~00(금) 학교에서는 피해자 및 주변 학생 10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조사
- '00.00.00(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하여 가해자는 학교봉사 7일, 주변학생은 학교봉사 5일, 2일 및 서면사과 조치하였는데 학부모가 불쾌함을 표현하고 언론에 제보함

□ 조치사항

- '00.00.00(수) 06:00 도교육청에서 신문보도 확인 접수 후 ○○교육청에 구두 보고 및 사안 보고서 제출
- '00.00.00(수) 16:00 ○○교육청 ○○○장학사가 학교 방문하여 확인 및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지도

□ 재발방지 대책

- '00.00.00(수) 특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교원연수 실시 등 재발방지 노력 추진 중
- '00.00.00(목)이후: ○○교육청 전문상담교사가 방문 학생 개인상담 및 치유 활동 실시

학교폭력 진술서 양식 (예시)

학교폭력 진술서 (피해·가해학생용)

1	성명	학번	성별	남 / 여	
2	사안 진술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09년 3월 19일 오후 12:30경 ② 1개월 간 2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학교 밖()		
		무엇을 /어떻게	(폭력상황, 폭력기간, 피해상황 집단여부 등 기록) - 배를 몇 대 때렸다 - 전에도 2번 정도 더 때린 적이 있다		
		왜	특별한 이유 없음		
3	목격한 학생 (모두)	① 같은 반 친구 (이○○, 박○○) ② 다른 반 친구 () ③ 기타()			
4	현재 기분				
5	원하는 조치	① 나 - 사과하기 ② 상대 학생 - 사과하기 (예-사과, 치료비, 학급교체, 학교봉사, 사회봉사, 전학 등)			
6	필요한 도움	담임교사 - 내가 그런 행동 안하게 도와주기 학 교 - 예방교육 실시 학 부 모 - 위로			
7	기타				
8	작성일	200년 월 일	작성 학생	장 ○○ (서명)	

학부모 진술서 (예시)

학부모 진술서

1. 본 진술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2.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사안 해결을 위해 학교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1	학교폭력 경험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input type="checkbox"/> 가해자 <input type="checkbox"/> 방관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성명	김 ○○	학년, 반	○○학년 ○○반	성별	남
3	사안 인지 경위					
4	현재 자녀의 상태	신체적 - 배에 멍이 듦 정신적 - 학교에 가기 무서워하는 등 불안증세				
5	교우 관계	(친하게 지내는 학생이 있는지, 친한 친구가 누구이며, 몇 명 정도 인지 등) 정○○, 김○○과만 친한 것 같음, 평소에 교우관계가 넓지는 않음				
6	자녀관련 정보	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실제로 밝혀진 것 외에도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때 3~4명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음			
7	자녀 진술 내용	(사안에 대해 자녀가 부모에게 말한 것) 아무 이유 없이 와서 때리고 돈을 빼앗았다고 함 친구들이 보고 있어서 더 힘들었음				
8	현재까지의 부모 조치	학생의 말을 듣고 화를 냈을 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함				
9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특이점, 성격 등) 학생이 예민한 편이므로 조사과정에서 배려가 필요함				
10	현재 부모의 심정	(어려운 점 등) 부모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음				
11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부모 의견, 바라는 점	담임교사 - 생활지도를 더 철저히 해주었으면 함 학교 - 사과, 각서, 학급교체 (사과, 각서, 치료비 지급, 학급교체, 전학, 심리치료 등)				
12	(더 적을 것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예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제17조에 의거

1	학교명			2	보고 일시		
3	피해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가해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4	사안유형	신체폭력 / 금품갈취 / 언어폭력 / 따돌림 / 괴롭힘 / 성폭력 / 사이버폭력 및 매체폭력					
5	사안내용 (간단히)	누가	(피해학생, 가해학생 구분해서)				
		언제	(사안 발생 일시와 시간)				
		어디서	(학교 안팎 구분해서)				
		무엇을/어떻게					
		왜					
6	학생상태	신체적-					
		정신적-					
7	조치	피해학생					
		가해학생					
8	사후계획	피해학생					
		가해학생					
9	참고사항						
10	작성자	성명	(인)				
11	보고자	성명	(인)				

학교장 통고제도(소년보호재판)

분 류	내 용
통고 제도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
법 조 항	· 소년법 제4조 제3항
대 상 자	· 범죄소년(14세이상 ~ 19세미만) : 죄를 범한 소년 · 촉법소년(10세이상 ~ 14세미만)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우범소년(10세이상 ~ 19세미만) :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불안감 조성, 가출, 유해환경 접하는 경우)
제도 목적	·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 재비행의 방지와 환경조정을 우선함 · 법이 정한 다양한 처분으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움
활용 사건	· 지속적인 집단따돌림 사건 · 수사 대상이 되어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 ·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하고 지속적인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처리 절차	· 사건접수(통고 또는 송치) → 조사(전문조사관 조사) → 심리개시 결정 또는 심리 불개 시 결정 → 심리 → 보호 처분 또는 불처분, 심리 개시 결정 취소 및 심리 불개시 결정
사건 접수	· 학교장, 보호자가 직접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접수
제도 장점	· 법원의 처리 내용이나 결정이 검경철의 수사 자료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장래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법원이 사건을 맡게 되어 학교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법원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 피해자 측의 의견진술 및 피해변상 등에 관한 화해가 가능하며, 절차 지연에 따른 문제 예방과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함
연 락 처	· 수원지방법원 소년법정 법정동 210호 · ☎ 031-210-1114, ☎ 031-210-1482~4, 야간 ☎ 031-210-1111

지도·자문 위원

박경석(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종욱(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유선만(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문수(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원능력개발과장)
강운석(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이석길(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장학관)

기획위원

황병렬(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심광섭(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장학사)
오상환(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하태훈(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장학사)
김춘경(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덕준(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장학사)
강인식(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서미향(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집필위원

임규석(청북중학교 교감) 김교성(용동중학교 교사)
김기자(화홍중학교 교사) 김영미(광주중앙고등학교 교사)
김윤영(정남초등학교 교사) 김초선(용인대덕중학교 교사)
김현정(별망중학교 교사) 류상하(상촌중학교 교사)
문구룡(장당중학교 교사) 박민석(청명고등학교 교사)
신동우(청명고등학교 교사)

담임교사를 위한

생활·인권 교육 매뉴얼

발행일 : 2010년 09월

발행인 :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

<http://www.ken.go.kr>

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전화 (031) 249-0114
